

세법연구 15 - 1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2015. 12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이 상 엽 연구 위원

공동연구원

박 수 진 공인회계사

이 은 별 연 구 원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 보험 현황	12
1. 보험의 일반적 사항	12
가. 보험의 개념	12
나. 보험상품별 분류	18
다. 보험료의 구분	24
라. 보험급여의 종류	28
마. 변액보험	29
2. 보험시장 현황	32
가. 우리나라 보험시장 현황	32
나. 세계 보험시장 현황	35
III.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과세제도	39
1. 우리나라	40
가. 납입 단계의 보험료 과세제도	40
나. 수령 단계의 보험차익 과세제도	44
다. 보험차익의 비과세 특례 규정	47
라. 보험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규정	54
2. 미국	56
가. 납입 단계의 보험료 과세제도	56

나. 수령 단계의 보험차익 과세제도	56
다. 보험차익의 비과세 특례 규정	61
라. 보험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규정	64
3. 일본	67
가. 납입 단계의 보험료 과세제도	67
나. 수령 단계의 보험차익 과세제도	67
다. 보험차익의 비과세 특례 규정	71
라. 보험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규정	71
4. 영국	74
가. 납입 단계의 보험료 과세제도	74
나. 수령 단계의 보험차익 과세제도	74
다. 보험차익의 비과세 특례 규정	87
라. 보험 관련 상속세 과세 규정	90
5. 뉴질랜드	91
가. 납입 단계의 보험료 과세제도	91
나. 수령 단계의 보험차익 과세제도	91
다. 보험차익의 비과세 특례 규정	94
라. 보험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규정	94
IV.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관련 소비세 과세제도	95
1. 우리나라	95
가. 부가가치세	95
나. 교육세	96
2. 국제기구 회원국	98
가. 유럽연합	98
나. 경제협력개발기구	100

V. 국제비교 및 요약.....	106
1. 국제비교	106
가. 개인 납세자의 보험 과세제도	106
나. 보험 관련 소비세	116
2. 요약.....	117
가. 개인 납세자의 보험 과세제도.....	118
나. 보험 관련 소비세.....	120
 참고문헌.....	 121
 부 록.....	 124

표목차

〈표 II-1〉 보험계약 당사자별 분류.....	15
〈표 II-2〉 보험사고별 생명보험상품.....	19
〈표 II-3〉 영위 사업별 보험상품	22
〈표 II-4〉 보험료의 구성.....	25
〈표 II-5〉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및 보험환급금.....	29
〈표 II-6〉 우리나라 보험업 성장추세.....	33
〈표 II-7〉 생명 및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 현황.....	34
〈표 II-8〉 세계의 보험업 성장추세.....	35
〈표 II-9〉 세계 생명보험 시장현황(2014년 수입보험료 기준).....	36
〈표 II-10〉 세계 손해보험 시장현황(2014년 수입보험료 기준).....	37
〈표 III-1〉 보험료공제 연혁.....	42
〈표 III-2〉 보장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 세제혜택 조세지출.....	44
〈표 III-3〉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계산(예시).....	47
〈표 III-4〉 장기 저축성 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특례 조세지출.....	53
〈표 III-5〉 해약환급금 차액검증요건 관련 연령별 적용 비율	63
〈표 III-6〉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과세방법(예시).....	68
〈표 III-7〉 손상 자산의 대체(예시).....	77
〈표 III-8〉 부분 중도 해지로 인한 과세대상 보험차익의 계산(예시).....	82
〈표 III-9〉 과세대상 보험차익 산출세액 계산(예시).....	86

〈표 IV-1〉 EU회원국 부가가치세 세율 및 보험료수입세 도입 현황.....	99
〈표 IV-2〉 OECD 회원국 부가가치세 세율 구조 및 보험료 수입세 도입 현황.....	101
〈표 IV-3〉 IPT 세율 연혁.....	104
〈표 V-1〉 납입 단계의 보험료 세제혜택.....	107
〈표 V-2〉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과세.....	109
〈표 V-3〉 신체상 상해로 인한 보험금 과세.....	109
〈표 V-4〉 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금 과세.....	110
〈표 V-5〉 보험료 적립금 투자수익 과세유형.....	111
〈표 V-6〉 만기, 중도 해지로 수령하는 환급금 과세.....	112
〈표 V-7〉 수령 방법별 보험차익의 계산.....	113
〈표 V-8〉 국가별 보험차익의 비과세 규정 요건 비교.....	115
〈표 V-9〉 IPT와 한국의 교육세 비교.....	117
〈부표 1〉 생명보험계약 관련 개인소득세 및 상속세 과세제도 국가별 비교.....	124

그림목차

[그림 II -1] 기간경과에 따른 자연보험료와 평준보험료.....	26
[그림 II -2] 변액종신보험의 도해.....	31

I. 서론

- 우리나라는 보험의 순기능과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여 조세정책 측면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보험이 가진 순기능이란 위험 보장(risk protection), 사회적 안전망 확보, 노후 대비 재원 마련 등이 있음¹⁾
 - 대표적인 조세지원 정책을 꼽으라면 개인 소득세제에서의 보험료 공제제도와 보험금 비과세 규정을, 소비세제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있음
 - 전자는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액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음
 - 후자는 부가가치세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는 이자에 대한 면세제도를 보험회사의 보험용역까지 확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효과가 있음

- 성숙한 보험시장의 규모와 금융기법을 도입한 보험상품의 다양화를 고려해 볼 때 과거 70년대, 90년대에 도입한 현행 조세지원 정책이 금융상품 간 조세 형평성이나 다른 산업 간의 조세 형평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과연 현 시점에도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²⁾
 - 2013년 2월 13일자 소득세법 개정 시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³⁾

1) 서희열 등(2008), p.10.

2) 현행 조세지원정책의 연혁을 살펴보면 소득세제상 보험료공제 규정은 1976년에 최초 도입되었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과세규정은 1991년부터 시행됨

3) 유형웅(2013), 신보미·심태섭(2013), 이인범 등(2014)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 국가의 현행 소득세제와 소비세제를 중심으로 개인 납세자의 보험 과세제도와 보험회사의 보험 관련 소비세를 비교·연구함
 - 소득세제의 측면에서 미국, 일본, 영국, 뉴질랜드의 납입 단계의 보험료와 수령 단계 보험금에 대한 과세제도를 검토함
 - 소비세제의 측면에서 국제기구 회원국의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보험료 수입세(Insurance premium tax)를 살펴봄⁴⁾
 - 현행 세제상 금융상품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을 고려한, 보험 관련 조세지원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위한 분석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세 도입 시 실효성 여부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않음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회사나 개인 사업자가 개입되지 않는, 개인 납세자의 자발적인 보험계약에 한하고 있음
 -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보험료 및 보험급여는 회계나 세무상으로 비용과 수입금액으로 처리됨
 - 법인 등의 단체건강보험, 퇴직보험 역시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함
 - 그리고 연금소득세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상품이나 근로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의무적 가입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는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본 보고서는 제I장 서론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 II 장에서 우리나라 보험업 현황 및 OECD 회원국의 보험 현황, 보험의 일반적인 개념을 간략하게 검토함

4) 보험은 금융투자와 위험 보험(risk protection)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부가가치세를 대체한 보험료 수입세를 도입함. 상세한 내용은 후술함

-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뉴질랜드 등 4개국의 보험과세제도를 개인 납세자의 측면에서 납입 단계의 보험료 과세제도와 수령 단계의 보험차익 과세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봄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와 EU 또는 OECD와 같은 국제기구 회원국별로 보험용역 관련 소비세를 검토함
- 제Ⅴ장에서는 개인 납세자 측면에서의 보험 과세제도와 보험회사 측면에서의 보험 용역 관련 소비세를 국제비교함

Ⅱ. 우리나라 보험 현황

1. 보험의 일반적 사항

가. 보험의 개념

1) 정의

- 보험은 위험 보장(risk protection)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benefits)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임⁵⁾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인명, 재산, 배상책임 등에게 발생하는 유의적인 보험 위험(significant insurance risk)을 인수하고,
 -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동안 유의적인 보험 위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보장(protection)행위에 관한 대가인 보험료(premium)을 지급함으로써 체결된 계약에 해당함⁶⁾

- 보험의 속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바, 경제적, 사회적, 법률적, 수리적 관점에서 이를 살펴봄⁷⁾
 - 경제적 관점의 보험은 보험회사의 위험 인수행위뿐 아니라, 인수한 개별적인 보험을 결합하여 위험 분산효과를 내는 경우까지 포함함

5)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6) 조석희(2015), p.331.

7) 김창기(2015), pp.18~20.

- 사회적 관점에서의 보험은 상부상조(相扶相助)를 근본이념으로 하여, 사회의 다수가 모여 협력을 형성하고 개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금의 형태를 띠고 있음⁸⁾
- 법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보험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에 맺어진 재무적 손실의 전보(indemnity of financial loss)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⁹⁾으로 피보험자의 불확실성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대가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를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규정될 수 있음
-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손실에 대한 예측을 통해 배분하는 제도로 확률과 통계라는 수리적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함

2) 보험계약의 당사자

- 보험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당사자는 보험회사(the insurer), 보험계약자(policyholder), 피보험자(the insured), 보험수익자(beneficiary)가 있음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자기의 명의로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며,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음
 - 피보험자(the insured)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함
 -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동일하지만, 생명보험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보험수익자(beneficiary)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약정된 보험금(benefits)을 수령하게 되는 자를 의미함

8) 그러나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의해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보험단체가 형성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보험계약자가 자발적으로 협력하거나 규합하여 보험단체를 형성한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이현열, 2015, 각주 17)

9) 이경룡(2011), p.111.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자 본인인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¹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됨
- 전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손해보험의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생명보험의 경우)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고, 후자는 다른 경우를 의미함
 - 후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¹¹⁾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채무면제나 무상이전 등의 보험계약자와 제3자 간 원인관계를 기초로 함¹²⁾
 - 당사자에 따른 보험계약의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가 달라지므로 세무상 구분의 실익이 있음¹³⁾
 - 일반적으로 전자로부터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소득세제가 적용되고, 후자로 인한 보험금은 무상이전의 성격을 가지므로 증여세제가 적용됨¹⁴⁾
 - 보험사고의 대상물과 피보험자 사이의 일정한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는 피보험이익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이를 타인의 보험이라고 함¹⁵⁾

10)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됨. 이는 보험계약자와 타인 간의 원인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 원인관계는 보험계약자와 타인 간 채권·채무관계이거나 무상으로 타인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증여관계일 수 있음(손영철·김종필, 2012, p.196)

11) 민법 제539조

12) 손영철·김종필(2012), p.196.

13) 상세한 내용은 제Ⅲ장에서 설명함

14) 손영철·김종필(2012), p.196.

15) 손영철·김종필(2012), p.196

〈표 II-1〉 보험계약 당사자별 분류

보험계약 당사자		분류
생명보험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자기를 위한 자기의 보험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타인을 위한 자기의 보험
	보험계약자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자기를 위한 타인의 보험
	보험계약자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타인을 위한 타인의 보험
손해보험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자기를 위한 자기의 보험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타인을 위한 자기의 보험

- 보험계약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간 달리 부여됨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음¹⁶⁾
 - 이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든 동일함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또는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있음

3) 보험계약의 원칙

-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이익의 원칙(principle of insurable interest), 손실전보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 보험자대위의 원칙(principle of subrogation), 대수의 원칙(the law of large numbers), 수지상응의 원칙이 적용됨¹⁷⁾
- 피보험이익의 원칙은 보험계약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과 피보험자 사이의 일정한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보험목적물의 손실로 인하여 특정한 피보험자가

16) 상법 제736조.

17) 일반적으로 손실전보의 원칙이나 보험자대위의 원칙은 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입게 되는 손실은 전보(填補)함¹⁸⁾

- 특정 재산에 대해 법률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고로 인하여 재산이 손상 또는 멸실되었을 때 피보험이익을 주장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피보험자는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또는 재산 관련 계약관계에서 생성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예기치 않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이익을 주장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자신이 피보험이익을 주장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특정인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주장할 수 있음

□ 손실전보의 원칙은 피보험사고의 경제적 상태를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정도의 보상에 한정하므로, 보험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원칙을 의미함

- 보험의 종류에 따라 손실전보의 원칙은 달리 적용됨
 - 재산 및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제 손실가치로서 부모(付保)되는 금액한도 내에서 실제 손실액을 보상함
 - 그러나 생명보험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됨

□ 보험자대위의 원칙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을 전보한 보험회사는 그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제3자로부터 손실을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¹⁹⁾ 주로 손해보상의 개념을 전제로 함²⁰⁾

18) 김창기(2015), p.142.

19) 상법 제681조, 제682조.

20) 조석희(2015), p.393.

-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손실전보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람의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허용되지 않음²¹⁾

- 대수의 법칙은 관찰의 횟수를 늘려가면 일정한 발생확률이 나오고, 이 확률은 대개 비슷하게 진행됨을 의미함²²⁾
 - 대수의 법칙이 보험제도에 적용된다는 것은 다수의 가입자로 구성된 동일한 성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단체²³⁾가 존재할 때 그 단체의 가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 발생확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

- 수지상등의 원칙은 다수의 계약자들이 보험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지급금의 총액이 보험기간 만료 시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²⁴⁾
 -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의 순보험료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계산됨을 가정함
 - 예를 들어, 사망보험에 해당하는 종신보험은 평생 동안 확정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로 사망표상의 최종 나이가 되면 보험가입금액과 동일하게 됨을 가정함²⁵⁾

21) 상법 제729조. 단, 상해보험 중 손해보상적 성격의 담보위험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인정하고 있음(상법 제729조)

22) 생명보험협회(2015) p.28.

23) 대수의 법칙에 의해 보험단체라는 관념적 공동체가 성립함. 보험회사가 대규모 자본을 갖추고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이 금융이익을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단체의 관리자가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 있음(이현열(2007), p.54)

24) 생명보험협회(2015) p.29.

25) 김두철 · 서병남(2015), p.104.

나. 보험상품별 분류

1)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별 분류

-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보험제도를 분류하면 크게 생명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겸영할 수 있는 제3보험이 있음²⁶⁾
 - 보험 전문성 확보 및 보험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간의 인수 위험, 위험 발생의 수준, 보험기간 등의 영업위험이 본질적으로 상이한 영업권의 겸업을 엄격하게 금지함²⁷⁾
 - 제3보험은 사람의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있음
 - 사람의 신체에 대한 보험으로 사람의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생명보험에 속하지만, 비용손해와 의료비 등 실손 보상적 급부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는 손해보험으로 분류될 수 있음²⁸⁾

가) 생명보험(life insurance)²⁹⁾

(1) 사망보험상품 · 생존보험상품 · 생사혼합보험상품

- ‘자연인의 사망이나 생존’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손실 보장을 위한 보험계약에는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이 있음
 - 재산 손실 등을 보장하는 보험과 달리 일반적으로 경제적 손실의 측정이 용이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장기(long-term)에 해당함

26) 보험업법 제4조.

27) 보험업법 제10조.

28) 생명보험협회(2015), p.211.

29) 생명보험업 해당 상품에는 이외에도 연금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이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제의 적용을 받고, 후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서 적용되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함

-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은 일정한 기간 동안 보장하는 정기보험(term policy)과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장하는 종신보험(whole life policy)이 있음³⁰⁾
 - 정기보험은 1년, 5년, 10년, 20년, 60세, 70세, 80세 등 기간이 정해져 있음

- 일정기간 생존 시 지급하는 순수생존보험(pure endowment insurance)은 보험계약 상 일정기간이 도달하기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실무상으로는 사망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의 형태로 판매됨
 - 양로보험을 생사혼합보험(endowment insurance)라고도 하며, 사망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되며, 생존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위한 보험이 됨

〈표 II-2〉 보험사고별 생명보험상품

보험사고 종류	생명보험 종류
사망	종신보험(whole life policy)
	정기보험(term policy)
생존	순수생존보험(pure endowment policy)
생사혼합	양로보험(endowment policy)

(2) 연금보험(annuity)³¹⁾

- 광의의 연금은 일정기간 또는 지정된 피보험자의 생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주기적인 급부 제공이라고 정의됨³²⁾
 - 주기적인 지급액은 원금과 청산되지 않은 원금의 이자소득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음³³⁾

30) 김두철·서병남(2015), p.152.

31) 연금보험료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설명은 제외함

32) 김두철·서병남(2015), p.182.

33) 예를 들어,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정확하게 평균수명만큼 산다면, 그 사람은 연금보험계약

- 연금보험의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연금개시 전의 위험보장기간(제1보험기간)과 연금 지급기간(제2보험기간)으로 구분되며, 제1보험기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준비금(책임준비금)이 지급되면서 계약이 소멸됨³⁴⁾
- 연금보험의 지급방법은 생존기간 동안 평생 지급되는 종신연금형, 확정된 기간 동안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하는 상속연금형 등이 있음³⁵⁾

가) 손해보험(general insurance)

- “재산에 대한 손실위험 또는 배상책임에 보장하기 위한 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에 준하여 보상받으므로,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기대하기 어려움³⁶⁾
- 손해보험의 종류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이 있음³⁷⁾
 -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은 화재나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함
 - 보증보험이란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험을 의미함
 - 주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부담하는 주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보증수단으로 사용되는 보험임

을 이용하여 이득이나 손해를 보지 않지만,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했던 몫은 회수할 수 없으며, 평균여명보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소득재원이 된다고 볼 수 있음

34) 생명보험협회(2015), p.196.

35) 생명보험협회(2015), p.196.

36) 보험연구원(2012), p.12. 실무상 재산에 대한 손실위험은 ‘교환가치’의 손해와 ‘사용가치’의 손해로 구분할 수 있음

37) 보험업법 제4조.

-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 등 기타 급여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보험을 말함
- 이 외에도 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등에 속하지 않는 모든 손해보험종목을 일컫는 특종보험이 있음³⁸⁾
 - 책임보험, 기술보험, 권리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비용보험, 날씨보험 등 산업화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고자 개발된 보험임

나) 제3보험³⁹⁾

- 제3보험은 신체의 질병, 상해 및 이로 인한 간병상태를 보험사고의 대상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질병보험을 기본계약(주계약)으로 하여 특약을 부가하여 보장을 확대한 보험상품을 판매함
 - 질병사망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금액은 생명보험은 제한이 없으나, 손해보험은 80세까지,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 제3보험의 종류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호보험이 있음
 -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한 의료비 등과 상해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임
 - 보험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 등을 실손 지급함
 - 질병보험은 암을 포함한 특정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의료자금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진단확정, 수술, 입원, 요양에 따른 필요자금을 정액으로 보장하며,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 지급함
 - 질병보험은 일반사망에 대한 보장급부는 없으나 일반사망특약을 부가하여 보장

38) 조석희(2015), p.389.

39) 생명보험협회(2015), pp.221~246.

가능함

- 간병보험은 일상생활 장애 상태 또는 중증치매 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대부분 보험기간은 종신(일부 80세 만기)임
-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라 정액보상과 실손 보상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정액보상형태로 2003년 8월부터 판매됨

- 제3보험은 보험약관상 보장하지 않은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함⁴⁰⁾

〈표 II-3〉 영위 사업별 보험상품

구분	생명보험	제3보험	손해보험
보험사고	자연인의 생존·사망	신체의 상해, 질병, 간병	재산상 손해
피보험이익 ¹⁾	원칙적으로 없음	원칙적으로 없음 (실손 보전의 경우, 존재)	존재
보험종류	사망보험 순수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방식	정액보상	정액보상, 실손 보상	실손 보상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	보험사고의 대상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보험수익자	별도 지정 가능	별도 지정 가능	피보험자와 동일
취급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보험기간	장기	장기	단기

주: 1) 생명보험의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실손 보전이 가능한 제3보험의 경우 자신이나, 가족관계에 있는 특정인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자료: 생명보험협회(2015), p.212. 표 '보험의 구분'을 재수정함.

40) 책임준비금에 대한 상세 내용은 후술함

2)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 보장성 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의미하며,⁴¹⁾ 저축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의미함⁴²⁾
- 보장성 보험은 전체 보험료 중 위험보장에 대한 대가로 구성된 위험보험료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저축성 보험은 위험보험료의 비중이 낮고 보험사고의 발생과 무관하게 보험계약자에게 다시 반환하는 금액에 대응되는 저축 보험료의 비중이 더 높음
 - 보험료의 구분에 대한 상세 내용은 후술함
-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으로 구성되나,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저축성과 보장성 기능이 혼합되어 있음
 - 예를 들어, 양로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계약 만료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는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전자는 보장성 보험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으로 볼 수 있음
- 현행 소득세제상 보장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특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세무상 구분의 실익이 있음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험계약을 보장성 보험으로 정의함⁴³⁾
 - 소득세법에서는 저축성 보험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41) 보험업감독규정 1-2조 제3조.

42) 보험업감독규정 1-2조 제4조.

4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4 제2항

다. 보험료의 구분

- 보험료(premium)는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요한 수익이며,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위험보장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함⁴⁴⁾
- 생명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손해율을 기초로 함

1) 생명보험계약의 보험료

가) 보험료 계산의 세 가지 기초율

-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예정사망률(assumed mortality rate), 예정이율(assumed interest rate), 예정사업비율(assumed expense rate)의 세 가지 기초율이 필요함⁴⁵⁾
 - 보험료는 보험계약 당시 정해지므로 보험료의 산출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존율이나 사망률이 요구되고, 일반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하여 어떤 집단이 매년 사망하거나 생존하는 비율을 각 연령별로 구함
 - 실무적으로는 20개 생명보험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한 제8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됨⁴⁶⁾
 - 생명보험계약은 장기계약에 해당하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가입 초기에 예정이율을 결정함
 -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경비는 보험가입금액이나 보험료의 일정비율

44) 조석희(2015), p.422.

45) 김두철 · 서병남(2015), p.331.

46) 김두철 · 서병남(2015), p.332.

로 정해지는데 이를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함

- 예정사업비는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으로 구분됨
- 전자의 경우 보험설계사의 활동경비 및 급여, 점포운영비, 진단비, 광고 선전비 등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계약관리를 위한 운용비용을 포함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가 있음

나) 보험료의 구성

- 기초율 중에서 예정사망률과 예정이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순보험료(net premium)이라고 하고, 예정사업비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보험료는 부가보험료 (loading premium)라고 하며 순보험료와 함께 영업보험료를 구성함
- 순보험료는 다시 위험보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와 보험사고의 발생과 무관하게 보험계약자 등에게 이자를 붙여 다시 반환하는 금액에 대응되는 저축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음⁴⁷⁾
 - 위험보험료는 어떤 보험연도(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연도 계약일의 전일)에 납입되는 순보험료 중에서 그 연도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당하는 보험료를 의미함⁴⁸⁾
 - 저축보험료는 장래 만기생존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축적되는 보험료임

〈표 II-4〉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 기초율	구 분		
	예정사망률	위험보험료	순보험료
예정이율	저축보험료		
예정사업비율	부가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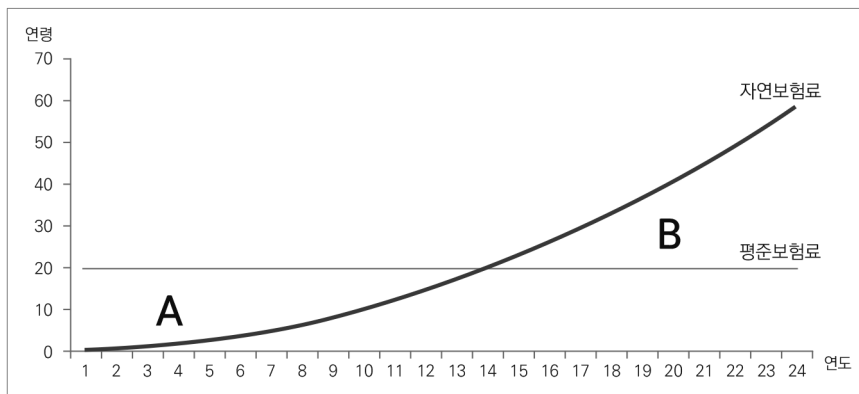
47) 조석희(2015), p.435.

48) 김두철 · 서병남(2015), p.385.

다) 자연보험료과 평준보험료

-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예정사망률이 변하므로 매년 달라지는 보험료를 자연보험료(natural premium)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보험기간에 걸쳐 총괄적으로 수지상등이 되도록 정한 보험료를 평준보험료(level premium)라고 함⁴⁹⁾
 - 자연보험료는 단체정기보험 등과 같이 특수한 보험 종류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고, 보험기간에 걸쳐 수지상등의 원칙이 성립하도록 한 평준보험료를 사용함⁵⁰⁾
 - [그림 II-1]에서 계약 초기에는 평준보험료를 자연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하고 계약 후기로 갈수록 덜 납부함에 따라 계약 초기에 더 많이 징수한 보험료(A 구간)는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었다가, 계약 후기에 부족한 보험료(B 구간)를 충당하게 됨

[그림 II-1] 기간경과에 따른 자연보험료와 평준보험료



자료: 김태훈(2014), p.72

49) 김두철 · 서병남(2015), p.341.

50) 조석희(2015), p.426.

라) 책임준비금

- 전통적으로 생명보험은 사망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래 사망 시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될 부분을 보험회사에 미리 납부하는 저축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⁵¹⁾
 - 이러한 이유는 현행 생명보험의 보험료가 자연보험료 방식이 아닌 평준보험료 방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임

- 이와 같이 보험 초기에 미리 납부된 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며, 규제감독기관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험회사의 내부에 책임준비금을 적립토록 규정함
 - 저축보험료를 장래 생존자 수를 감안하여 예정이율로 운용하여 보험회사 내부로 축적한 것이 책임준비금이며, 장래 사망 시의 책임준비금을 포함하여 만기까지 운용되어 축적된 것이 만기보험금이 됨
 - 중도 해지 시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적립한 책임준비금에서 신계약비 상각 등을 고려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됨

- 우리나라 생명보험 실무상 책임준비금의 적립은 대부분 보험료적립금으로 이루어져 있음⁵²⁾
 - 보험료적립금이란 보험수리적으로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에 납입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⁵³⁾

51) 김두철·서병남(2015), p.136.

52) 김두철·서병남(2015), p.139. 이 외에도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준비금 및 재보험료적립금, 보증준비금으로 구분하여 적립토록 함(보험업법 제120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제6-11의 2조)

53) 손해보험회사 역시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에 의거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함

2)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

- 보험료 산출방법은 일반적으로 순보험료법과 손해율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전자는 보험사고의 발생빈도와 사고 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곱한 금액을 순보험료로 산출함
 - 보험사고의 발생빈도는 경험률에 의한 대수의 법칙에 의해 산출하고, 지급보험금 역시 경험률에 의한 보험사고 한 건당 평균지급액을 계산함
 - 후자는 보험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지급한 보험금이 일정기간 동안 수입된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예정손해율과 예정사업비율, 그리고 이익률을 부가하여 보험료를 계산함

라. 보험급여의 종류

- 보험계약에서 지급하는 보험금(benefits), 환급금(surrender value), 배당금은 보험회사의 영업비용에 해당하지만, 보험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의 보험차익을 구성할 수 있음
- 생명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으로 구분됨⁵⁴⁾
 -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 사망, 장애, 퇴직, 생존 시에 지급하는 금액임⁵⁵⁾
 - 사망의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을 사망보험금(death benefit)이라고 함
 -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만큼의 사망위험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부분을 위험보험금이고 함
 - 환급금은 보험계약의 해지, 효력 상실에 대한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금액으로 해약 환급금(surrender value)이라고도 함
 - 해약환급금은 보험회사 내부에서 적립한 보험금적립금(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

5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4).

55) 김두철 · 서병남, 2015, p.394.

된 신계약비, 해약 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함

○ 배당금은 금리차보장금, 위험률차배당금, 이차배당금 등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임

□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주로 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원수보험금과 보험환급금이 있음

○ 보험환급금에는 만기환급금, 개인연금지급금, 계약자배당금, 장기해지환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⁵⁶⁾

- 만기환급금은 저축성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 시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고, 장기저축성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 시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장기해지환급금이 있음
- 개인연금지급금은 개인연금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임
- 계약자배당금은 장기저축성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임

〈표 II-5〉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및 보험환급금

구분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보험금	만기·사망·장해·퇴직·생존 시 지급 보험금	보험사고시 지급 보험금
환급금	해지·효력 상실에 대한 환급금	중도·만료에 대한 만기환급금, 중도 해지에 대한 해지환급금
배당금	금리차·위험률차·이차배당	계약자배당금

마. 변액보험

□ 변액보험은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계약으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로 기금을 구성한 후,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임⁵⁷⁾

56)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4〉, 조철희(2015), p.249.

- 주로 생명보험계약과 연계됨

1) 특별계정

- 변액보험상품의 저축성 요소를 가진 보험료는 일반계정이 아닌 '특별계정'에서 운용됨⁵⁸⁾
 -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에서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을 제외한 순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가 특별계정으로 투입되어 운용됨
 - 또한 매월 위험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되므로, 실질적으로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보험료는 저축보험료 성격을 가진 적립금에 한함
- 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일반계정이라 하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계정을 특별계정이라 함⁵⁹⁾

2) 변액보험의 현금흐름⁶⁰⁾

- 변액보험은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액과 해지환급금액이 변동됨
 -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기본보험금과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른 변동보험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함
 - 기본보험금액은 최저사망보험금을 의미함

57) 생명보험협회(2015), p.202.

58) 김두철·서병남(2015), p.243. 특별계정을 설정하는 이유는 투자 위험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자산에 비례한 공평한 투자손익의 배분이 필요하고, 다른 보험상품의 계약자를 변액보험상품의 투자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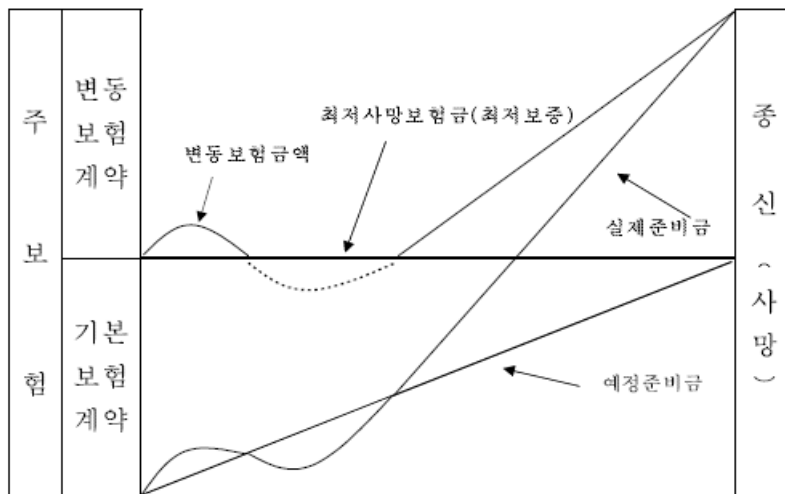
59) 관련 법령이란 보험업법 제19조의 2 제1항.

60) 김두철·서병남(2015), pp.255~264.

- 변액보험과 유니버설보험을 결합한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차감 이후 금액 기준)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에게 적립금의 인출을 허용함
 - 유니버설보험은 보험료의 추가납입 또는 자금 필요 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함

- 변액보험의 해지 시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최저 보증액은 없음
 - 실무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변동보험은 대부분 보험기간이 종신인 경우로 운영되고 있어서 만기보험금이 없음

[그림 II -2] 변액종신보험의 도해



- 주: 1. 기본사망보험금: 계약체결 시 정한 사망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2. 변동보험금액: 초과적립액에 따라 추가된 후의 사망보험금. 초과적립액이란 실제준비금에서 예정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3. 예정준비금: 예정이율에 의해 계산된 준비금
 4. 실제준비금: 실적이율에 의해 계산된 준비금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1년 7월 7일자), 「변액종신보험의 판매 허용」.

2. 보험시장 현황

가. 우리나라 보험시장 현황

- 우리나라의 보험업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현재 보험업 수입보험료는 200조 4,210억원으로 1990년의 19조 6,330억원에서 약 921%가 증가함
 - 2015년 현재 생명보험업은 118조 5,340억원으로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비율은 1990년 대비 639%가 증가하고, 2015년 현재 손해보험업은 81조 8,870억원으로 1990년 대비 2,182%가 증가함
 -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43%,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57%가 증가하여 2010년 기준으로 약 48%가 증가함
 - 단, 2013년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8.75%가 감소했는데 이는 2012년 세법개정의 효과가 2014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초저금리 기조로 대응한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 판매비중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⁶¹⁾
 - 그리고 보험 공시이율 인하로 예금금리와 공시이율 간 차이가 축소되면서 가입 유인이 감소함

61) 한국신용평가(2014)

〈표 II-6〉 우리나라 보험업 성장추세

(단위: 십억원, %, 천원)

연도	수입보험료 ¹⁾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²⁾	총 계		
2015	118,534	81,887	200,421	13.04	3,960
2014	110,575	76,575	187,150	12.60	3,712
2013	77,237	53,758	130,995	11.98	2,608
2012	115,309	68,542	183,851	14.40	3,677
2011	87,836	60,965	148,801	11.90	2,989
2010	83,007	52,244	135,251	11.30	2,736
2000	46,671	16,478	63,149	10.50	1,464
1990	16,044	3,589	19,633	11.00	432

주: 1) 여기서 수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즉 보험회사의 수입금액을 의미함

2) 손해보험의 보험료에는 퇴직연금 특별계정이 제외됨

자료: 손해보험협회(2015), p.38, 보험개발원(2012~1015), 연도별 보험산업지표,
<http://www.datasom.co.kr>

- 우리나라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와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2010년 각각 11.3%, 274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04%, 396만원으로, 보험침투도는 약 15%, 보험밀도는 약 45%가 증가함⁶²⁾
 -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보험시장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1990년 당시 43만 2천원에 불과하던 국민 1인당 보험료가 2015년 현재 396만원으로 증가하여 국민생활 전반에 보험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 보험업 현황을 보장성 상품과 저축성 상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4년 현재 각각 55조 5,580억원, 92조 7,330억원으로 2008년 대비 보장성 상품은 약 19%가 증가하고, 저축성 상품은 약 126%가 증가함

62) 보험연구원(2014), p.69.

보험침투도는 수입보험료 대비 명목 국내총생산의 비율로 산출되며, 한 국가의 보험산업이 해당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가늠하게 하는 지표로서 국내 경제에서 보험산업의 잠재력, 전망 등을 의미함. 국민 1인당 보험료인 보험밀도는 총인구 수 대비 총보험료의 비율로 산출하고, 해당 국가의 보험 보급 및 보험산업의 발전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에 해당함

- 생명보험의 보장성 상품은 2014년 현재 33조 8,670억원으로 2008년 30조 3,690억원에서 11.52%가 증가하고, 생명보험의 저축성 상품의 경우 2014년 현재 44조 2,150억원으로 2008년의 20조 8,630억원에서 111.93%가 증가함
 - 손해보험의 보장성 상품은 2014년 현재 21조 6,910억원으로 2008년 16조 3,140억원에서 32.96%가 증가하고, 저축성 상품은 2014년 48조 5,150억원으로 2008년의 20조 1,680억원에서 140.55%가 증가함
- 저축성 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장성 수입보험료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저축성 보험의 수요 증가⁶³⁾와 함께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규정에 따른 저축성 보험의 수요 증가,⁶⁴⁾ 2012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 인하 또한 저축성 보험의 수요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

〈표 II-7〉 생명 및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십억원)

연도	생명보험 ¹⁾			손해보험 ²⁾		
	보장성	저축성	합 계	보장성	저축성	합계
2014	33,867	44,215	78,082	21,691	48,515	70,206
2013	24,358	30,362	54,720	15,905	34,688	50,593
2012	31,518	55,951	87,469	20,919	44,345	65,264
2011	29,385	30,302	59,687	20,133	38,012	58,145
2010	29,411	27,736	57,147	18,703	30,651	49,354
2009	29,706	23,653	53,359	17,069	25,083	42,152
2008	30,369	20,863	51,232	16,314	20,168	36,482

주: 1)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계정'만을 대상으로 함

2) 손해보험의 보장성 보험에는 화재, 해상, 자동차, 보중, 특중, 해외원보험을 포함하였으며, 저축성 보험에는 장기보험과 개인연금에 포함하고, 퇴직보험은 제외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도

63) 한국신용평가(2012)

64) <http://news.joins.com/article/12033353>

- 우리나라 보험 과세제도의 대부분이 90년대 이전에 도입된 사실을 고려한다면, 현재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과세제도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됨

나. 세계 보험시장 현황

- 세계 보험업 시장규모를 수입보험료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4년 현재 4조 7,782억달러로 2000년 당시 2조 4,444억달러와 비교하면 약 95% 증가하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4년 2조 6,545억달러로 2000년 당시 1조 5,184억달러와 비교하면 약 75%가 증가하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2014년 2조 1,237억달러로 2000년 당시 9,265억달러와 비교하면 약 129% 증가함
 -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으로 2010년 대비 수입보험료 금액은 약 10% 증가함

〈표 II-8〉 세계의 보험업 성장추세

(단위: 백만달러)

연도	수입보험료		
	생명보험	손해보험	총 계
2014	2,654,549	2,123,699	4,778,248
2013	2,545,045	2,048,587	4,593,623
2012	2,620,864	1,991,650	4,612,514
2011	2,611,718	1,954,445	4,566,163
2010	2,516,377	1,819,310	4,335,687
2005	1,979,703	1,452,011	3,425,714
2000	1,518,401	926,503	2,444,904

자료: Swiss Re, Sigma, 각 연도

- 2014년 현재 세계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 일본, 영국 순으로 높으며 미국이 5,282억달러로 1위, 일본은 3,716억달러로 2위, 영국은 2,353억달러로 3위, 한국은 1,015억달러로 8위를 차지함
- 보험침투도의 경우 15.6%로 대만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 영국, 한국이 8.4%, 8.0%, 7.2%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보험밀도의 경우 3,638달러로 영국이 가장 높았으며 대만, 일본, 중국, 호주, 이탈리아, 한국이 3,371달러, 2,926달러, 2,552달러, 2,332달러, 2,014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음

〈표 II-9〉 세계 생명보험 시장현황(2014년 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백만달러, %, 달러)

순위	국가	총수입보험료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1	미국	528,221	3.0	1,657
2	일본	371,588	8.4	2,926
3	영국	235,321	8.0	3,638
4	프랑스	176,950	5.9	127
5	중국	172,761	1.7	2,552
6	이탈리아	145,292	6.5	2,332
7	독일	118,475	3.1	1,437
8	한국	101,572	7.2	2,014
9	대만	79,156	15.6	3,371
10	호주	56,151	3.8	2,382
∴	∴	∴	∴	∴
45	뉴질랜드	1,826	0.9	401

주: 대상국은 88개국임

자료: Swiss Re, Sigma, No4/2015, p.38, pp.41~42.

- 2014년 현재 세계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이 7,522억달러로 1위, 중국은 1,514억달러로 2위, 독일은 1,361억달러로 3위, 한국은 579억달러로 9위를 차지하고 있음
 - 보험침투도의 경우 네덜란드가 8.5%로 가장 높았으며 뉴질랜드, 미국, 한국이 5.0%, 4.3%, 4.1%로 그 뒤를 이음
 - 보험밀도의 경우 네덜란드가 4,393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가 2,360달러, 2,155달러, 2,63달러로 그 뒤를 이음

〈표 II-10〉 세계 손해보험 시장현황(2014년 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백만달러, %, 달러)

순위	국가	총수입보험료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1	미국	752,222	4.3	2,360
2	중국	151,490	1.5	109
3	독일	136,170	3.4	1,617
4	영국	115,945	2.6	1,185
5	일본	108,174	2.4	852
6	프랑스	97,759	3.1	1,350
7	네덜란드	74,100	8.5	4,393
8	캐나다	73,235	4.1	2,063
9	한국	57,943	4.1	1,149
10	이탈리아	49,443	2.1	746
⋮	⋮	⋮	⋮	⋮
28	뉴질랜드	9,808	5.0	2,155

자료: Swiss Re, Sigma, No4/2015, pp.40~42.

- 이상과 같이 수입보험료, 보험침투도 및 보험밀도를 기준으로 세계 보험시장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세계 보험시장과 비교한 우리나라 생명보험 시장과 손해보

험시장은 조사대상국 88개국에서 8위 및 9위를 차지함

- 보험침투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시장에서는 4위, 손해보험시장에서는 7위를 차지하고, 국민 1인당 보험료인 보험밀도의 경우도 역시 생명보험시장에서는 4위, 손해보험시장에서는 8위를 차지하여 경제규모 및 인구 수 대비 보험시장의 비중이 큼

Ⅲ.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과세제도

-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 과세제도를 크게 납입 단계의 보험료 과세제도와 수령 단계의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제상 처리로 구분하여 먼저 살펴봄
 - 납입 단계의 보험료 과세제도에서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험료 이외 사망, 사고, 자산의 손괴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출하는 보험료에 대한 현행 세제상 혜택을 살펴봄
 - 수령 단계에서는 사망, 생존, 만기, 상해, 질병 등 보험사고로 수령하는 보험금과 중도 해지로 수령하는 해지환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생존, 만기를 위한 보험은 예·적금, 연금저축계좌 등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상 생존, 만기를 보험사고로 보지 않고 중도 해지로 인한 환급금과 동일하게 취급함

- 소득세제 외에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나, 보험료의 대납, 보험계약의 이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제가, 사망보험금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연구의 범위에 포함함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 보험계약 당사자에 따라 보험계약을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자기를 위한 계약은 소득세제가, 타인을 위한 계약은 증여세제가 적용됨

- 개인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보험 과세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봄

1. 우리나라

가. 납입 단계의 보험료 과세제도

1) 보험료공제

-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지출하는 소정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산출시 보험료공제의 세제혜택이 부여됨
- 1976년 12월 22일에 보험료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였고,⁶⁵⁾ 2014년 1월 1일 세법개정으로 현행과 같이 세액공제로 전환함⁶⁶⁾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에 한함
 - 1976년 12월 22일 보험료공제 규정 신설 시, 보험료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이 3년 이상인 인보험계약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그리고 이에 준하는 보험임⁶⁷⁾
 - 현행 세제상 100만원 이하의 보험료 지출액을 한도로 하여 12%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⁶⁸⁾
 - 다만,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함
-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는 보험료공제 도입 당시에는 저축성 보험계약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1981년 세법 개정 시 보장성 보험계약으로 한정되어 현행 세제에 이르고 있음

65) (구) 소득세법 제61조의2(1976. 12.22. 신설 법률 2933호).

66) 소득세법 제59조의 4(2014.1.1. 개정 법률12169호).

67)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 2(1976.12.31. 신설 시행령 8351호).

68)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 1976년 12월 22일 도입 당시, 3년 이상인 인보험계약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그리고 이에 준하는 보험임⁶⁹⁾
- 1978년 12월 30일 세법 개정 시 보험료공제 대상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아래와 같이 확대함
 - 보험계약이 3년 이상인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으로 보험계약기간이 경과할 경우 지급하는 환급금이 보험계약기간에 걸친 보험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보험
 -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 중 생명공제
- 1981년 12월 31일 세법 개정에서는 3년 이상이라는 보험계약기간 요건을 삭제하고 손해보험의 범위를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으로 확대함
- 1982년 12월 21일 세법 개정 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여 환급받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함⁷⁰⁾
 - 당시 세제상 저축성 보험차익이 비과세됨에도 불구하고 저축성 보험계약의 보험료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중적인 세제혜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아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보험료공제 대상으로 함⁷¹⁾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

69)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 2(1976.12.31. 신설 시행령 8351호).

70) (구)소득세법 제61조의2(1982.12.21.개정 법률 3576호).

7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법」,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보험료 지출액의 한도는 1976년 12월 22일 보험료공제 규정 신설 당시에는 12만원으로, 이후 15만원, 24만원, 50만원, 70만원으로 인상하다가 2002년 12월 18일 세법 개정 시 현행 세제와 같이 100만원으로 규정됨⁷²⁾
-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의 경우, 2000년 12월 29일 세법 개정 시 관련 규정을 신설 하고 현행 세제와 같이 100만원을 한도로 함⁷³⁾

〈표 Ⅲ-1〉 보험료공제 연혁

(단위: 만원)

대상 보험계약	보험료 지출액 한도										
	1976	1978	1979	1981	1982	1992	1999	2000	2002	현재	
생명보험 등 ¹⁾ 저축성 보험	12	15	24	→	-	-	-	-	-	-	
보장성 보험 ²⁾	일반	-	-	-	24	→	50	70	→	100	→
	장애인	-	-	-	-	-	-	-	100	→	→

주: 1) 보험계약이 3년 이상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으로 보험계약 경과후 수령하는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에 한함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을 의미함

3) → : 전년과 동일, - : 관련 규정 폐지

2)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

- 현행 소득세제상 주요 보험 관련 세제혜택인 보장성 보험 보험료공제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납세자(근로소득자와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하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

72) (구)소득세법 제61조의 2(1978.12.05.개정 법률 3098호), (구)소득세법 제61조의 2(1979.12.28.개정 법률 3175호), (구)소득세법 제61조의 2(1992.12.08.개정 법률 4520호), (구)소득세법 제52조(1994.12.22.개정 법률 4803호), (구) 소득세법 제52조(1999.12.28.개정 법률 6051호), (구)소득세법 제52조(2002.12.18. 법률 6781호)

73) (구) 소득세법 제52조(2000.12.29. 개정 법률 6292호).

(100만원 한도)에 대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2013년 이전), 또는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토록(2014년부터) 함

- 보험료 공제신청액은 2010년 당시 16조 5,648억원에서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20조 1,452억원, 22조 7,463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된 2014년에는 5,733억원으로 현저하게 감소함
 - 공제신청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및 보험료율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도 고려해야 하지만, 2013년까지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주요 요인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규정⁷⁴⁾에 따른 반사적 효과와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의 강화⁷⁵⁾에 따른 효과로 판단됨⁷⁶⁾
 - 보험료 공제대상에는 생명보험계약에 납입한 보험료가 포함되며, 이 경우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동시에 보험료 공제 신청이 가능함

-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 조세지출은 2010년 당시 1조 7,840억원에서 2013년에는 2조 5,703억원으로 약 37.32%포인트가 증가하였지만, 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 2014년에는 688억원으로 현저하게 감소됨⁷⁷⁾

74)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기준금액은 당초 4,000만원에서 2013년부터 2,000만원으로 인하함

75) 2013년부터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을 강화하여 10년 이상 2억원 한도의 일반 저축성 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월적립형 저축성 보험으로 한정함

76) 특히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한 후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즉시연금보험상품의 보험차익에 비과세 세제혜택이 2013년 종료예정이라는 2012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절판마케팅 효과로 인한 생명보험 가입이 증가했다는 평가가 있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08/2012080801854.html 외 다수, 2016. 4.18 접속)

77)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상 보험료 공제신청액에 유효세율을 곱하여 조세지출액을 계산함

〈표 Ⅲ-2〉 보장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 세제혜택 조세지출

(단위: 억원,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제방식 ¹⁾	소득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보험료 공제신청액 ²⁾	165,648	190,703	210,452	227,463	5,733
유효세율/세액공제율 ³⁾	10.77	11.00	11.14	11.30	12
조세지출액	17,840	20,977	23,444	25,703	688

주: 1)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신청액에 유효세율을 곱하여 조세지출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된 2014년은 세액공제 신청액을 조세지출액으로 기재함

2) 납입 보험료 공제신청액은 연말정산 신고현황상 근로소득의 특별공제중 보험료공제액이며, 2014년의 경우에는 조세지출액에서 역산하여 계산함. 보험료공제액에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이 포함됨

3) 2010~2013년의 경우 유효세율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상 근로소득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으로 계산하고 2014년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12%(소득세법 제59조의4)를 적용함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수령 단계의 보험차익 과세제도

□ 보험계약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현금 유입액은 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령하는 보험금(benefits)과 ②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수령하는 환급금(surrenders)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후자는 만기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했을 경우 수령하는 만기환급금과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하여 수령하는 해지환급금으로 나뉨⁷⁸⁾

－ 본문에서는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을 환급금으로 칭하고 있음

78) 배당금(dividend)을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1)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

- ①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②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소득세제에서는 과세되지 않음⁷⁹⁾
 - 즉,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손해보험) 또는 보험수익자(생명보험)와 동일한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보험차익은 과세되지 않음
 - 그리고 자기를 위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하는 보험차익 역시 소득세제상 적용을 받지 않음⁸⁰⁾

2) 만기, 중도 해지로 인하여 수령하는 환급금⁸¹⁾

가) 소득 구분

- 특정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됨⁸²⁾
 - 여기서 저축성 보험이란,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특정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이나 손해공제계약⁸³⁾,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을 의미함
 - 단,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

79)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 아니라고 규정함

80) 피보험이익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는 동일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 정하는 경우 타인의 보험이라함(손영철·김종철(2012), p.196)

81) 만기나 생존을 보험사고로 보지 않고, 중도 해지로 인한 현금유입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본문에서는 환급금으로 칭함

82) 소득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8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임⁸⁴⁾

나) 보험차익 금액의 계산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따라 ①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②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보험금)에서 납입 보험료 · 공제료를 차감하여 계산함
 - 납입보험료에 보험계약기간 중에 수령한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며,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봄⁸⁵⁾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① 만기보험금 · 공제금 또는 ② 해지 환급금) - 납입 보험료(공제료)

- 그러나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지급받는 보험금의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부터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⁸⁶⁾

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후문단.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임

85)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86) 국세청 유권해석(원천 - 737, 2010.09.15.).

〈표 Ⅲ-3〉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계산(예시)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시기는?

〈보험계약의 조건〉

- 연금보험계약 가입 이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일시납 보험료 : 500,000,000원
- 매월 수령액 : 3,760,000원
- 보험기간(연금수령기간) : 15년(총수령금액 676,800,000원)

〈보험차익 계산〉

- 매월 수령액의 합계가 원금이 되는 시점

$$= 500,000,000 \div (3,760,000 \times 12 \text{개월}) = 11 \text{년 } 1 \text{개월}$$
- 1개년 ~ 11개년 : 보험차익 없음
- 12개년 : $541,440,000 - 500,000,000 = 41,440,000$
- 13개년 : $586,560,000 - 500,000,000 - 41,440,000 = 44,120,000$
- 14개년 : $631,680,000 - 500,000,000 - (41,440,000 + 44,120,000) = 46,120,000$
- 15개년 : $676,800,000 - 500,000,000 - (41,440,000 + 44,120,000 + 46,120,000) = 45,120,000$

자료: 국세청 유권해석 원천-737(2010.09.15.)

다. 보험차익의 비과세 특례 규정

1)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특례 규정

가) 연혁

- 1990년 이전에는 사적 보험제도를 통한 사회보장 기능의 강화, 장기 저축의 유도, 그리고 보험산업의 활성화 목적으로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보험계약기간, 납입기간 등에 대한 요건이 없었음
- 1990년 12월 31일 세법 개정 시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을 열거하고 관련 시행령을 신설함⁸⁷⁾

- 조세의 중립성 제고를 통한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 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함
-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3년 미만의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함
 - 이후 비과세 기준 연수를 1994년 12월 3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5년 미만, 1996년 5월 13일 시행령 개정 시 7년 미만, 1998년 4월 1일 시행령 개정 시 5년 미만, 1999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 시 7년, 2003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 시 10년으로 기준 연수를 개정함

□ 보험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금융투자적인 성격이 가미된 변액보험이나 유니버설 보험 등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들이 개발됨에 따라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87)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 3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7조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공제금이나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급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차익”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것
2.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단체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이나 손해공제계약
3.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보험계약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 외의 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한다.

$\text{보험차익} = \text{보험금가액} \times (\text{보험금의 수취인이 부담한 보험료액} / \text{보험료 총액}) - \text{보험금의 수취인이 부담한 보험료액}$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보험계약 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불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지급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에서 “보험계약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불입한 날을 말한다.

특례 요건을 이용한 소득세 회피⁸⁸⁾의 가능성이 증가함⁸⁹⁾

- 보험계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2013년 2월 13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제25조를 대폭 개정하고, 2014년 2월 21일자 개정 시 납입조건을 다소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 보험차익 비과세 특례를 포함한 대부분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의 주요 수혜자가 고소득층과 고액자산가에 편중되었다는 연구에 따라⁹⁰⁾ 2013년 세법 개정 시 일반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불입액 한도(2억원)를 규정함
 - 계약유지기간의 강화, 보험상품별 비과세 기준금액의 명확화, 계약자 변경에 따른 비과세 기간 기산일의 재계산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함
 - 상세한 내용은 나) 비과세대상 저축성 보험상품 편에서 후술함
 -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과세대상 연간 연금수령액 한도 규정을 도입함

나) 비과세대상 저축성 보험상품

-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저축성 보험은 대부분 비과세에 해당되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 15.4%(지방세 포함)로 원천징수되며, 타 금융소득과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됨

88) 소득세 회피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장성 요소와 저축성 요소가 결합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공제의 적용과 함께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여 이중적인 혜택의 향유가 가능함. 이 외에도 중도인출 및 보험료 추가 납부가 가능한 유니버설 보험은 예·적금과 유사하지만,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특례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과세되지 않음

89)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의 보험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에 미국은 사회보장이나 노후대책 마련 등의 보장 목적 이외에 투자를 꾀하는 보험상품이 비과세 특례요건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생명보험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함

90) 김학수(2013), p.7.

-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또는
소정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해서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우체
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임⁹¹⁾

(1)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⁹²⁾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비과세함
 -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계약유지
기간 조건)
 -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납입기간 조건)
 - 최초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
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이 6개월 이
내일 것(기본보험료 조건)
-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음

(2) 종신형 연금보험계약⁹³⁾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비과세됨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이나 수
익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연금 이외의 형태로 보험금이나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9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소정 기관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의미함

92)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

9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호.

- 또는 통계법에 따른 기대여명 연수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 자기를 위한 자기생명의 보험에 해당함
-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금수령액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⁹⁴⁾
 -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에는 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 연금수령액 한도액이란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평가액에서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를 나눈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연금수령액 한도액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 × 3

□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한도나 납입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음

(3) 일반 저축성 보험계약⁹⁵⁾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2억원 한도의 일반 저축성 보험은 보험차익이 비과세됨
 - (1)와 (2)에서 설명하는 비과세대상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 또는 종신형연금보험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보험계약자 1명당 납입할 저축성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일 것

94) 장기간 연금의 분할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한 연간 수령액 한도기준이 2014년 2월 21일 시행령 개정 시 도입됨

95)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 비과세대상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 및 종신행연금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제외함
 - 최초 보험료 납입한 날(“최초납입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 (“계약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다만, 계약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함
 - 중도 인출 등의 원인으로 연금형태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10년 미만으로 보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 그러나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금형태가 아닌 형태로 원금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며, 이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니버설 보험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가 적용됨⁹⁶⁾
- 비과세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이나 비과세 종신행 연금보험계약으로서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 저축성 보험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함
- (4) 보험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의 최초 납입일 결정
- 일반 저축성 보험계약,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함
 - ① 계약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단, 사망으로 인한 변경 제외)
 - ②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 ③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개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 다만,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③에만 적용함

96) 손영철 · 김종필(2012), p.207.

2) 저축성 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조세지출

- 저축성 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 조세지출은 2011년 767억원에서 2012년 839억원으로 약 9.38% 증가하다가 2013년에 593억원으로 감소함
 - 2012년까지는 보다 엄격해진 비과세 요건의 적용 이전 추가적인 저축성 보험계약 가입 증가에 따른 효과로 판단되며,
 - 2013년의 조세지출 감소는 저축성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인하로 인한 효과로 판단됨⁹⁷⁾
 - 보험개발원에서 산출·공표하는 과거 공시기준이율⁹⁸⁾을 살펴보면,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평균 4.47%, 4.28%이고, 2013년에는 평균 3.78%로 2011년 대비 약 15%가 하락함

〈표 Ⅲ-4〉 장기 저축성 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특례 조세지출

(단위: 억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잠정)
감면세액	- ¹⁾	767	839	593	681

주: 1) 2010년의 경우 사회복지기반조성 조세지출(1조 2,998억원)의 일부로 표시됨에 따라 개별 실적치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97) 공시기준이율은 공시기준이율 산출시점(매월 16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에 대한 정기예금이율, 회사채수익률, 약관대출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매월 보험개발원에서 산출, 공시하는 이율을 의미함(「생명보험회사의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98) https://www.kidi.or.kr/DATA/20160309_%EA%B3%B5%EC%8B%9C%EA%B8%B0%EC%A4%80%EC%9D%B4%EC%9C%A8.pdf

라. 보험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규정

1)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

-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보험금 전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함⁹⁹⁾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서 수령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보험금을 의미함
 -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여부에 상관없음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전항과 동일하게 처리함¹⁰⁰⁾
 - 이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 중 사망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액에서 차지하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함
 - 그러나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계약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계약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¹⁰¹⁾

2) 증여세 과세대상 보험금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만기 및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¹⁰²⁾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손해보험)나 보험수익자(생명보

99)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100)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101)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는 동일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 정한 자기를 위한 타인의 보증을 의미함(손영철·김종철(2012), p.196)

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협)가 다른 보험계약을 말함¹⁰³⁾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손해보험)나 보험수익자(생명보험)가 동일한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만기 및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 단,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함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 적용을 배제함¹⁰⁴⁾

□ 보험계약자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납입보험료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됨¹⁰⁵⁾

- 보험계약자의 변경이란 피보험자 등 종전 계약관계의 존속으로 하여 다른 보험계약자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 변경된 보험계약자는 계약변경 시점에 보험계약의 해지 및 연금·만기시 보험금 수령 등 보험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보고 계약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봄

103) 상법 제639조 제1항

104)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2항

105) “원고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를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험계약자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에 따라 보험을 해지한다면 원고는 ○○생명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될 것이므로 그 변경 시에 과세대상이 특정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5493 판결)가 있었으나, 현재는 보험계약자의 변경을 증여세 과세사건으로 보고 있음(조심2015서407, 2015.03.18. 외)

2. 미국

가. 납입 단계의 보험료 과세제도

1) 보험료 공제

-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과 같이 납입 단계의 세제상 혜택은 없음
 - 이는 미국소득세법상 개인이 지출하는 보험료를 사적인 비용(personal expense)¹⁰⁶⁾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2)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납입 보험료는 증여재산가액 계상 시 필요경비로 공제됨

나. 수령 단계의 보험차익 과세제도

- 생명보험계약에서 수령하는 보험금 등은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만,¹⁰⁷⁾ 손해보험계약의 경우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음
 - 손해보험계약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은 실무상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계약에서 수령하는 보험금 등을 ①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수령하는 보험금과 ② 보험사고 이외 중도 해지나 만기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한 경우 수령하는 해약환급금

106) 26 U.S. code § 262.

107) 26 U.S. code § 61(a)(9), 61(a)(10).

(cash value)과 만기환급금(이하 환급금)으로 구분하여 과세제도를 살펴봄

1)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

가) 사고 · 상해 · 질병

- 사망, 신체상 상해, 질병 등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생명보험계약 등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후술하는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생명보험계약 등은 다음과 같음
 -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말기 및 만성 환자로서 의제사망에 의한 보험금도 포함)
 - 신체적 손상 또는 질병으로 원인으로 하여 생명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으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¹⁰⁸⁾¹⁰⁹⁾
 - 신체적 손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국민연금 또는 군인연금으로부터 받는 연금이나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받는 금액¹¹⁰⁾
 - 다만 신체적 손상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더라도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로 수령하는 보험금은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¹¹¹⁾
- 따라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명보험계약 등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108) 26 U.S. code § 104(a)(2).

109) 26 U.S. code § 104(a)(3).

110) 26 U.S. code § 104(a)(4).

111) 징벌적 손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형벌적 요소로서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배상받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단, 수령한 보험금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보험료 총액(investment)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¹¹²⁾
- 사망보험금 중 계약기간 중에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도 요건을 상실한 당해 과세연도에 일시에 실현된 것으로 봄¹¹³⁾

나) 자산의 손상

- 자산 멸실, 손상, 도난 등을 원인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수령 보험금의 차액은 과세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함¹¹⁴⁾
 - 해당 자산이 법에서 규정한 소정의 주된 주택(main home)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서 최고 25만USD의 소득공제(또는 조인트세무신고의 경우 최고 50만USD)가 허용됨¹¹⁵⁾
 - 수령 보험금으로 대체자산 구입 시에는 양도소득의 과세이연(postpone reporting the excess gain)을 적용받을 수 있음¹¹⁶⁾
- 주된 주택의 멸실 또는 정부기관에 의한 멸실된 주된 주택의 출입금지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비용(living expenses)의 보전을 위하여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료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¹¹⁷⁾
 - 단, 재해선포지역(federally declared disaster area)인 경우에는 비과세함

112) 26 U.S. code § 7702(g)(1).

113) 26 U.S. code § 7702(g)(1)(c).

114) IRS(2015), p.10.

115) 주거용 주택은 통상의 주거지로서, 해당 사건일 이전에 5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주거용으로 거주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택으로 사용요건 이외 직장, 우편이나 청구서의 주소, 선거 등록지, 가족의 거주지 등이 판정요건으로 활용된다(Reg. Sec.1.121-19(b)(2))

116) IRS(2015), p.11.

117) IRS(2015), p.6.

2) 만기, 중도 해지로 인하여 수령하는 환급금

가) 소득 구분

- 만기와 중도 해지로 인하여 수령하는 환급금의 경우에는 통상 소득(ordinary income)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 단,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나) 보험차익 금액의 계산

-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 수령에 따라 보험차익 금액의 계산방법은 차이가 있음
- 보험차익의 수익인식 시기는 급부 개시일이며, 개시일 이후에 납입 보험료 총액(investment)을 초과하는 분에 한하여 총수입금액에 포함함¹¹⁸⁾¹¹⁹⁾
 - 납입 보험료 총액은 보험계약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급부를 차감한 금액임

(1) 연금수령

- 생명보험계약 등에서 보험금 등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대수익에서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제외율'¹²⁰⁾)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에 포함함¹²¹⁾
 - 여기서 기대수익(expected return)은 연금지급이 기대수명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기대생존율표(actuarial tables)에 의하고, 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118) 26 U.S. code § 72(b)(2).

119) 유형웅(2013), p.101.

120) 26 U.S. code § 72(b).

121) 26 U.S. code § 72(a).

따라 분할 지급되는 연금의 총액(installment payments)을 의미함¹²²⁾

$\begin{aligned} \text{연금수령시 보험차익} &= \text{연금수령액} \times (1 - \text{제외율}) \\ \text{제외율} &= \text{기대수익} \div \text{납입보험료} \end{aligned}$
--

(2) 연금 외 수령

- 일시금 등 연금 외의 형태로 환급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우선 수령하여 해당 금액의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수령하는 시점에 따라 과세소득 계산에 차이가 있음¹²³⁾
 - 여기서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는 환급금 등에는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 보험계약자 대출, 보험계약의 양도, 담보제공으로 보험계약자가 득하는 이익 등을 포함함¹²⁴⁾
- 연금 개시일 전에 수령하는 일시금은 계약에 따른 소득과 납입한 보험료(Investement)로 구분하여, 소득에 한하여 과세함¹²⁵⁾
- 연금 개시일 후에 수령하는 일시금은 당해 일시금에 해당하는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과세소득으로 봄¹²⁶⁾
 - 이 경우는 동일 보험계약에 의하여 일시금으로 일부 수령하고, 연금으로 일부 수령하는 경우만 한함¹²⁷⁾
 - 동일 보험계약상 납입 보험료는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부분과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되는 부분으로 안분됨¹²⁸⁾

122) 26 U.S. code § 72(c)(3).

123) 유형웅(2013), p.103.

124) 유형웅(2013), p.103, 26 U.S. code § 72(e)(1)(B), (e)(4)(A).

125) 26 U.S. code § 72(e)(2)(B).

126) 26 U.S. code § 72(e)(2)(A).

127) 유형웅(2013), p.103, 각주 175.

128) 26 U.S. code § 72(e)(2)(B).

다. 보험차익의 비과세 특례 규정

1) 생명보험 비과세 특례 규정

- 미국은 사망, 신체적 손상 또는 질병 등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생명보험계약 등에서 수령하는 소정의 보험금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비과세 특례 규정을 남용하여 조기사망으로 인한 위험보장이나 노후대책 마련 등의 목적 이외에 투자를 꾀하는 보험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세제적격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정의를 1984년에 제정함¹²⁹⁾
- 생명보험 비과세 특례 규정은 미국 세법에서 정하는 정의에 부합하는 ‘생명보험’으로, 소정의 요건(이하 ‘비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¹³⁰⁾
 - 세제적격 생명보험은 ① 해약환급금 적립요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② 가이드라인 보험료요건과 해약환급금 차액검증요건을 만족하여야만 함
- 일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세제적격 생명보험 충족 여부를 분기별로 심사함

가) 환급금 적립요건(cash value accumulation test)

- 환급금 적립요건이란 계약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건 환급금이 당해 계약에 따른 장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납입하는 일시납 보험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보험의 본래적인 기능인 보장을 적정수준 유지하라는 취지로 보임
 - 일시납 보험료(net single premium)는 당해 계약에 따른 보험료와 지급보증이율을

129) 송경학(2015), p.104.

130) 26 U.S. code § 7702.

고려하여 정해짐

나) 가이드라인 보험료요건(guideline premium requirements)

- 사망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을 초과한 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건 해약환급금이 당해 계약에 따른 장래 보험금을 고려하여 정한 가이드라인 보험료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가이드라인 보험료의 한도액은 가이드라인 일시납 보험료와 가이드라인 연납 평균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말함
 - 가이드라인 일시납 보험료는 보험료와 통상적 수수료 및 지급보증이율(6%)를 고려하여 정해짐
 - 가이드라인 연납 평균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95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같은 금액을 불입한다는 전제하에 일시납보험료와 동일하게 보험료와 지급보증이율(4%)을 고려하여 정해짐

다) 환급금 차액검증요건(cash value corridor)

- 해약환급금 차액검증요건은 가이드라인 보험료요건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계약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건 사망보험금이 해약환급금에 정해진 비율(100~250%)을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임
 - 이는 보험계약에 따른 투자기능 외에 사망에 대한 보장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표 Ⅲ-5〉 해약환급금 차액검증요건 관련 연령별 적용 비율

연령	비율
0~40세	205~250%
40~45세	250~215%
45~50세	215~185%
50~55세	185~150%
55~60세	150~130%
60~65세	130~120%
65~70세	120~115%
70~75세	115~105%
75~90세	105~105%
90~95세	105~100%

자료: 26 U.S. code § 7702(d)(2)를 재구성함

이와 같은 비과세 적용요건은 양로보험에도 적용됨¹³¹⁾

라) 변액보험 요건 충족¹³²⁾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위의 '생명보험'에 대한 정의 이외에 추가로 만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음

변액보험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첫째, 보험회사의 일반자산계정(general asset accounts)과 분리된 특별계정에서 운용되어야 함
- 둘째, 연금형태의 계약¹³³⁾, 생명보험계약 또는 은퇴생활에 대한 보험계약이어야 하며

131) 26 U.S. code § 7702A, 1988년에 양로보험의 정의 즉, 양로보험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이 신설됨

132) 26 U.S. code § 817(d).

133) 생명, 사고, 건강, 자산, 책임 보험이 아니라도 연금형태로 지급되는 'pension plan'계약은 연

- 셋째, 그러한 형태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특별계정의 투자수익과 시가 가치가 반영되어 변동의 이익이 있어야 함
-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보험금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하여야 하며, 1년에 최소 1회 이상은 하여야 함¹³⁴⁾

2) 생명보험계약의 교환에 따른 과세이연

- 특정한 보험계약을 동일한 범주내의 다른 보험계약으로 교환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교환 당시에는 그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음¹³⁵⁾
 - 생명보험계약을 동일 범주 내의 다른 생명보험계약이나 양로보험(endowment), 연금(annuity)보험 계약,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으로 교환하는 경우
 - 양로보험을 동일 범주 내의 다른 annuity보험 계약이나 장기요양보험으로 교환하는 경우
 - annuity보험계약을 동일 범주 내의 다른 annuity보험계약이나 장기요양보험으로 교환하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을 동일 범주 내의 다른 장기요양보험으로 교환하는 경우

라. 보험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규정

- 증여, 유증,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의 보험금은 소득세가 아닌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됨¹³⁶⁾

금형태의 계약으로 간주함 26 U.S. code § 817(e).

134) 26 U.S. code § 7702(f)(9).

135) 26 U.S. code § 1035(a).

136) 26 U.S. code § 102(a).

1)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으며¹³⁷⁾,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예외사항도 정하고 있음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모든 재산으로 동산이나 부동산,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됨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생명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하 '사망보험금')¹³⁸⁾, 사전증여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연금이 있음
 - 사전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임¹³⁹⁾
 - 상속재산으로 보는 연금은 사망보험금과 달리 피상속인이 본인이 아닌 타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로서, 사망 후 지급보증기간 동안 당해 수익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임¹⁴⁰⁾

-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즉,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에 대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인 즉, 수익자가 누구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유언집행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며,¹⁴¹⁾
 - 유언집행자 외의 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단독으로 혹은 타인과 함께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 증표(incidents of ownership)를 갖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킴¹⁴²⁾

137) 26 U.S. code § 2031(a).

138) 26 U.S. code § 2042.

139) 26 U.S. code § 2035.

140) 26 U.S. code § 2039.

141) 26 U.S. code § 2042(1).

- 소유권 증표는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환수권(reversionary interest)을 갖는 경우라고 규정¹⁴³⁾되어 있으며, 이 외에 보험계약의 양도 및 해지권, 대출권, 담보권 등을 포함한다고 봄¹⁴⁴⁾

2) 증여세 과세대상 보험금

-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일반적인 증여세 관련 규정¹⁴⁵⁾을 따라야 하는데, 증여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폭넓게 정의되어 있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나 보험계약, 보험료 등의 부의 이전 역시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재무부규정(CFR)에서는 보험계약의 증여에 대하여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상속재산이 아닌 즉, 자신을 수익자로 하지 않고 타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하 ‘보험계약의 증여’)
 - 둘째,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이하 ‘보험료의 증여’)
 - 셋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대하여 환수권을 갖지 않으며,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보험계약을 양도하는 경우(이하 ‘보험계약의 양도’)

142) 26 U.S. code § 2042(2).

143) 26 U.S. code § 2042(2).

144) 26 C.F.R. §20.2042-1(c)(2).

145) 26 U.S. code § 2511.

3. 일본

가. 납입 단계의 보험료 과세제도

1) 지진보험료공제¹⁴⁶⁾

- 지진보험료공제는 지진 등에 의한 자산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손해보험계약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최대 5만엔을 한도로 전액을 공제함
 - 지진이나 분화에 의한 진파를 원인으로 화재, 손괴, 매몰, 유출되어 자산의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손해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 보험료나 부금(지진 등 손해부분)을 지불하는 경우에 허용함
 - 공제의 대상이 되는 지진보험료는 납세자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배우자, 기타 친족이 소유하고 있는 가옥을 보험이나 공제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료나 부금(지진 등 손해를 보전하는 부분)을 말함

2)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

- 보험상품에 대하여 계약자 이외의 자가 당해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불입한 보험료는 증여재산가액 계상 시 필요경비로 공제됨

나. 수령 단계의 보험차익 과세제도

- 일본은 생명보험계약 및 손해보험계약으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 등을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으로 보고 있음
 - 단, 손해를 전보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146) 일본 소득세법 제77조

1)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

가) 사고 · 상해 · 질병

-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 이 경우는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서,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 그러나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이 납부하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타인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며
 - 보험계약의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이 납부한 경우 수령한 보험금에 타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

〈표 Ⅲ-6〉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과세방법(예시)

사례 1)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녀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녀가 해당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

→ 자녀는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이며 보험료 납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됨

사례 2)

아버지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입한 경우

→ 아버지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 납입자이고, 자녀는 보험수익자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됨

사례 3)

아버지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료를 제3자가 납입한 경우

→ 자녀가 수령한 사망보험금 중 제3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됨

- 상해, 질병에 기인한 보험금이나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수령하는 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 단, 사고, 상해, 질병 등으로 손해보험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손해를 전보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 상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소정의 보험금, 손해배상금, 위로금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됨¹⁴⁷⁾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근무 또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던 기간에 대한 급여 또는 수익에 대한 보상으로 수령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보험금 등

나) 자산의 손상

- 자산의 손상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 등과 불법행위나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에 의하여 자산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령 받는 보험금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¹⁴⁸⁾

2) 만기, 중도 해지로 인하여 수령하는 환급금

가) 소득 구분

- 만기 또는 중도 해지로 인하여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방법에 따라 일시소득이나 잡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 다만,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¹⁴⁹⁾

147) 일본 소득세법령 제30조

148) 일본 소득세법령 제30조

149) 만일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됨(일본 소득세법 제9조 16호)

- 생명보험계약 중 정기금 급부계약 따라 보험금 등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 자소득으로 분리 과세함¹⁵⁰⁾
 - 정기금 급부계약(定期金給付契約)은 상속세법상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계약과 구분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보험상품으로 볼 수 있음¹⁵¹⁾¹⁵²⁾

나) 보험차익 금액의 계산¹⁵³⁾

- 과세대상 보험차익은 수령한 환급액에서 당해 계약과 관련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1) 연금 수령

- 연금개시일 이후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잡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납입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함¹⁵⁴⁾
 - 보험수익자가 상속, 증여로 취득한 보험계약상 연금 형태의 수령금액도 포함함

(2) 연금 외 수령

-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며,¹⁵⁵⁾ 납입 보험료 필요 경비공제 외 일시소득 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의 1/2를 과세대상으로 함¹⁵⁶⁾

150)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10

151) 이러한 구분은 상속세법에만 있으며, 보험업법 상에는 당해 구분이 없음

152) 유형용(2013), p.123.

153) 일본 소득세법시행령 183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184조 제1항 내지 제2항

154) 일본 소득세법시행령 183조 제1항, 184조 제1항

155) 일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제2항, 184조 제2항

156) 일본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 일시소득 특별공제는 최대 50만엔 까지 소득공제되며, 그 이하의 금액은 전액 공제함¹⁵⁷⁾

$$\text{일시금 수령시 보험차익} = (\text{보험금} - \text{납입 보험료} - \text{일시소득 특별공제}) \times 50\%$$

다. 보험차익의 비과세 특례 규정¹⁵⁸⁾

- 일본은 연금 외 수령의 경우 적용되는 일시소득 특별공제 규정과 해당 특별공제 차감 후 소득의 50% 비과세 이외에는 보험차익의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보험계약기간, 납입기간, 환급금 비율 등의 요건 규정이 없음

라. 보험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규정

1)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

- 본 연구와 관련하여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에는 다음이 해당됨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¹⁵⁹⁾
 - 특정 상황에서의 생명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¹⁶⁰⁾
 - 정기금 급부계약에 따른 보험금¹⁶¹⁾

- 피보험자가 상해, 질병 그 외 이와 유사한 사고 등을 보험사고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지

157) 일본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158) 일본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17호
159) 일본 상속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160) 일본 상속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161) 일본 상속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제6호

불되었어야 하는 보험금이 당해 피보험자가 사망 후에 지불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됨¹⁶²⁾

(1)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

- 사망에 따른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으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¹⁶³⁾(이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 또는 그 외의 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료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함¹⁶⁴⁾
 - 보험계약자, 보험료 납부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를 의미함
 - 해당 보험금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계약상 사망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상해를 포함함
 - 보험료를 피상속인이나 수익자 외의 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¹⁶⁵⁾

(2) 특정 상황에서의 생명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 타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당해 보험계약의 권리에 대하여 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부담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봄¹⁶⁶⁾¹⁶⁷⁾
 -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타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납부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이 됨¹⁶⁸⁾

162) 일본 상속세법 기본통달 3-7

163) 손해보험계약상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을 말함

164) 일본 상속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165) 일본 상속세법 기본통달 3-16

166) 일본 상속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167) 생명보험 계약 외에 정기금급부계약의 경우도 동일, 일본 상속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168) 일본 상속세법 기본통달 3-36

(3) 상속세 비과세

- 사망을 원인으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경우에는 상속세 비과세가 적용됨
 -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비과세 한도액 이하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수령한 금액(500만엔 한도)으로 함¹⁶⁹⁾

$\text{보험금의 비과세 한도액(A)} = 500\text{만엔} \times \text{법정상속인의 수}$
--

-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비과세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함

$(A) \times (\text{해당 상속인의 수령 보험금 합계액} \div \text{상속인 전원 수령 보험금 합계액})$
--

2) 증여세 과세대상 보험금

- 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 수령자 외의 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보험금 수령인은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에서 타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¹⁷⁰⁾
 - 단,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상해, 질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을 제외함
 -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우연한 사고에 기인한 보험사고로 사망 사건을 동반한 것에 한함

169) 일본 상속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170) 일본 상속세법 제5조 제1항

4. 영국

가. 납입 단계의 보험료 과세제도

1) 보험료 소득공제

- 과거 생명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했으나 현재는 폐지됨
 - 1984년 3월 14일 이전 체결된 생명보험 납부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제혜택(Life Assurance Premium Relief)이 적용되었음¹⁷¹⁾
 - 여기서 세제혜택이란 적격 보험료 납부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국 과세 관청이 직접 환급하는 규정을 의미함
 - 이와 같이 소득공제가 적용된 보험료는 보험차익 계산시 공제대항 납부보험료에서 제외됨
 - 단, 1984년 3월 14일 이전 체결된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2015년 4월 6일 이후 납부하는 보험료나, 또는 그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2015년 7월 6일 이후에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보험료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음

나. 수령 단계의 보험차익 과세제도

1)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

가) 사망 · 사고 · 질병 · 장애 · 간병

- 사망(death)으로 원인으로 생명보험계약에서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상세한 내용은 '2) 만기, 중도 해지로 인하여 수령하는 환급금'편에서

171) David Smailes(2015), p.979.

후술함

○ 단, 세계적격 생명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 사고(accident), 질병(sickness), 장애(disability), 실업(unemployment)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보험계약으로부터 피보험자(insured person)가 수령하는 보험금은 비과세됨¹⁷²⁾

○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피보험자(the insured)의 소득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¹⁷³⁾

□ 간병(long-term care)을 위하여 즉시필요연금보험계약(immediate needs annuities)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이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됨¹⁷⁴⁾

○ 여기서 즉시필요연금이란 종신보험계약(Purchased Life Annuity)에 해당하는 생명보험을 의미함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승인 간병서비스의 제공자(registered care provider)에게 보험금이 직접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함

- 영구적으로 예상되는 정신적·신체적인 손상(impairment), 부상(injury), 질병(sickness), 기타 질환(infirmity)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치료를 위한 간병(care)이 요구되어야 함

172) David Smailes(2015), p.800.

예시로는 주택담보대출보장보험(mortgage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채권자 보험(creditor insurance), 평생질병보장보험(permanent Health Insurance), 장기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등이 있음

173) TIOIA05 s735

a) 건강 또는 고용위험(health or employment risk)을 보장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b)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계약의 규정(provision)이 보험계약의 다른 급여에 의하여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c) 특정기간(specified periods) 이외 해당 위험과 관련하여 지급되어서는 안 되며, d) 해당 위험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지급은 보험회사의 손실에 대한 진정한 위험(genuine risk of loss)이어야 함

174) section 725 (2),(3) Income Tax (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

-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관계 법령에 의해 등록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간호(care)의 범위에는 숙박,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손상(impairment), 부상(injury), 질병(sickness), 기타 질환(infirmity)을 원인으로 인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포함함¹⁷⁵⁾

○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은 과세됨

나) 자산의 손상

- 자산의 손상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보험계약에서 수령하는 보험금 일시금(capital sum)은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과세대상에 해당함¹⁷⁶⁾
 - 해당 자산이 보험대상인 손해보험계약에서 자산 소유주가 수령하는 일시금(capital sum derived from assets)을 자산의 양도로 인한 대가로 간주하기 때문임
 -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한함

- 만일 수령한 보험금을 손상·멸실된 특정 자산의 복원 또는 대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간주하지 않음¹⁷⁷⁾
 - 보험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하여야 함¹⁷⁸⁾
 - 이 경우 대체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양도를 간주하였을 경우 계산되는 소득금액 만큼 감액됨
 - 자산의 손상 등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자산의 대체에 사용한 경우, 대체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을 <표 Ⅲ-7>에서 설명함

175) HM Revenue & Customs guidance manuals IPTM6215

176) section 22 (1)(b) The Capital Gain Act 1992("TCGA 1992")

177) section 23 TCGA 1992

178) HM Revenue & Customs guidance manuals CG15744

〈표 Ⅲ-7〉 손상 자산의 대체(예시)

1988년 7월, 취득가액 20,000파운드의 자산을 구입하고 대체가격(replacement value)을 보험
가액으로 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함
1990년 자산이 멸실되고, 같은 해 9월, 보험회사로부터 25,000파운드를 수령함
멸실된 자산의 잔존가치는 500파운드이고, 자산의 폐기비용은 400파운드가 소요됨
대체자산을 27,500파운드에 취득함
이 경우 대체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됨

〈계산〉 (단위 : 파운드)

1.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 계산		
총간주양도가액(A)		25,500
- 보험금 수령액	25,000	
- 폐기자산의 잔존가치	500	
폐기자산 총취득가액(B)		(24,640)
- 취득가액	20,000	
- 물가지수 소득공제(20,000× 0.212)	4,240	
- 양도 관련 비용공제	400	
간주양도소득금액(C=A-B)		860
2. 대체자산 취득가액		26,640
- 대체자산 취득원가	27,500	
- 간주양도소득금액(C)	(860)	

자료: HM Revenue & Customs guidance manuals CG15745

2) 만기, 중도 해지로 인하여 수령하는 환급금

가) 소득 구분

- 생명보험(life policy) 등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보험차익(chargeable event gain)은 이
자소득(saving income)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됨¹⁷⁹⁾

179) Income Tax (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ITTOIA05") s461.

생명보험계약(policy of life insurance), 종신보험(contracts for life annuities), 자본감액계약
(capital redemption policies)에 적용됨. 다만, 1968년 3월 20일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기간연장 이후 보험조건 등 변경이 없는 보험계약은 제외함

- 사고(accident)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특정 사고보험계약(accident insurance policy)은 생명보험계약으로 보지 않음¹⁸⁰⁾
-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양도, 만기, 피보험자의 사망은 보험차익을 발생시키는 과세대상 보험사고에 해당함¹⁸¹⁾
 - 보험계약상 모든 권리(right)가 금전 등을 대가로 하여 해지(surrendered)되거나 양도(assigned)되는 경우
 - 부분적인 중도 해지(partial surrender), 양도(assignment)로 인하여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함
 - 사망보험금(a death benefit)의 지급을 요하는 사망(death)이 발생한 경우
 - 생명보험의 만기(the maturity of a life insurance)가 도래한 경우
 - 1974년 12월 9일 이후 체결된 종신보험계약(life annuity contract)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액, 연금수령의 조건을 변경하여 수령하는 보험금 일시금(capital sum), 이익참가에 대한 권리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 등이 있음¹⁸²⁾
- 다만, 이혼 합의금(Divorce settlement)과 같이 법원명령에 의하여 생명보험에 부여된 권리가 이전(transfer)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보험사고로 보지 않음¹⁸³⁾

180) HMRC The Statement of Practice(6). 1992.

181) ITTOIA05, s484, Sch 2 para 99

182) David Smailes(2015), p.940.

183) Revenue Tax Bulletin December 2003 pp.1071-1073

나) 보험차익 금액(chargeable event gain)의 계산

(1) 만기·사망·해지·양도의 경우

- 과세대상 소득금액인 보험차익(chargeable event gain, CEG)은 보험계약상 총보험가액(total benefit value, TB)에서 공제 가능한 납부보험료 총액(Total allowable deductions, TD)을 차감하여 계산함¹⁸⁴⁾
 - 이전 과세연도에 이미 과세된 보험차익(Previous Chargeable events gain, PG)이 있는 경우에는 PG를 차감함

$CEG = TB - (TD + PG)$

- TB는 보험계약에서 지급되는 아래와 같은 금액의 합계를 의미함
 - 보험계약상 보험가액(the value of the policy or contract)¹⁸⁵⁾
 - 보험사고 이전 지급된 보험금 일시금(capital sum paid)
 - 보험계약상 다른 보험금(capital benefit)의 가치
 - 권리의 일부 해지로 처리되는 보험사고 이전에 이루어진 대출금
 - 확정소득채권(guaranteed income bonds)의 경우, 일부 중도 해지로 취급되는 보험사고 이전에 지급된 금액
 - 보험사고 이전에 양도된 권리의 가치 또는 금액

- TD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실질적으로 환급되거나 재투자되는 보험료에게 귀속가능한

184) ITTOIA05, s491

185) TTOIA05, ss491-494; FA 2012, s11(2)(4)-(6)

보험가액은 보험계약별, 사건별로 아래와 같이 결정됨

- ①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사망 시 보험가액(a value on a death)는 사망 직전 중도 해지를 가정하였을 경우 중도환급금(the surrender value), ② 보험계약의 양도 시에는 수령한 대가의 금액, ③ 보장채권보험(a guarantee income bond)의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④ 기타 보험사고로 인한 지급금과 생명보험계약 등 보험사고로 인한 정기적인 지급금의 자본 가치를 포함한 보험사로 인한 다른 보험금의 가치의 합계

수수료(commission)는 포함하지 않음

- 직전 3개년 동안 또는 과세대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입한 보험료 금액이 1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함
- 다만, 2007년 3월 21일 이후 인출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하며, 과세대상 보험사고 중 사망의 경우는 제외함

(2) 부분 중도 해지 · 양도의 경우¹⁸⁶⁾

- 부분 중도 해지로 처리되는 과세대상 보험사고는 아래와 같음¹⁸⁷⁾
 -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 대출(loan)¹⁸⁸⁾
 - 확정소득채권에서 수령하는 이자 금액¹⁸⁹⁾
 - 종신보험계약의 경우 연금(annuity)의 일부분으로서 수령하는 보험금 일시금(capital sums)
 - 이윤에 참가할 수 있는 보험계약상 권리의 결과로 인한 지급금의 인하
- 부분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한 보험차익의 발생 여부와 보험차익 금액의 계산 목적으로 해당 부분 중도 해지 등이 일어난 보험연도와 과세연도의 결정이 필요함
 - 보험연도(insurance year)는 보험계약의 개시일부터 시작한 12개월 또는 그 날짜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을 의미함
 - 단, 사망, 만기, 완전 중도 해지 등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는 종료됨

186) David Smailes(2015), pp.952-953.

187) HM Revenue & Customs guidance manuals IPTM3545

188) 다만, 보험계약이 세제적격보험계약으로서 ① 상업적인 이자율(commercial rate)이 적용되거나, ② 2000년 4월 6일 이전에 보험회사의 정규직 종업원에게 종업원의 주거취득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함

189) 확정소득채권은 계약기간 동안에는 이자소득을 수령하고, 계약 만기에는 일시금을 회수하는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함. 계약기간동안 수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분 중도 해지로 처리함(TTOIA 2005, ss 490, 500(d), 504; FA 2012, Sch 16 para 129)

○ 부분 중도 해지가 보험연도 중에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연도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해당 보험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

□ 보험차익 금액은 중도 해지 또는 양도된 권리의 총가치(net total value of rights surrendered assigned, VRS)에서 공제 가능한 납입보험료(net total allowable payment, TAP)를 차감하여 계산함

○ VRS는 보험 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 및 양도의 총가치에서 이전연도 과세대상 보험차익의 계산 시 고려되었던 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 양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전을 대가로 한 경우에 한하여 포함함

– 부분 중도 해지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중도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액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의 가치나 금액임

– 부분 중도 해지가 보험대출(loan)로 인한 경우에는 대출금액(amount of the loan)이 중도 해지의 가치에 해당함

○ TAP는 보험계약 개시일 이후 인출 가능한 연도별 보험료의 누계액임

– 인출 가능한 연도별 보험료란 매년 불입액의 5%에 해당하는 보험료(annual fractions of one-twentieth of the premiums paid)를 의미함

– 이전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보험차익 계산 시 반영되었던 부분은 제외함

$\text{부분 중도 해지의 CEG} = \text{VRS} - \text{TAP}$
--

□ 부분 중도 해지로 인한 보험차익 계산의 예시는 <표 III-8>와 같음

〈표 Ⅲ-8〉 부분 중도 해지로 인한 과세대상 보험차익의 계산(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2월 4일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5,000파운드를 보험료로 납부함 • 보험계약은 정기적으로 인출(periodical withdrawal)이 가능함 • 매년 2월 4일마다 750파운드씩 보험계약에서 인출함 	(단위: 파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7월 20일 3,500파운드 추가 인출함 	
2013년 2월 3일	
중도 해지 누계액(= 750 × 4회 + 3,500)	6,500
- 공제가능보험료 (= 15,000 × 5% × 5)	<u>(3,750)</u>
보험차익(2012/2013 과세연도)	<u>2,750</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2월 4일은 인출액이 없고, 2014년 2월 4일에 1,000파운드를 인출함 	
2015년 2월 3일	
중도 해지 누계액(= 750 × 4회 + 3,500 + 1,000)	7,500
- 이전연도 과세된 보험차익	(6,500)
- 공제가능보험료 (= 15,000 × 5% × 7)	(5,250)
+ 이전연도 공제된 보험료	<u>3,750</u>
보험차익(2014/15 과세연도)	보험차익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2월 4일자에 1,000파운드를 인출하고, 같은 해 7월 1일자로 중도 해지하여 13,250파운드의 해지환급금을 수령함 	
2016년 2월 3일	
중도 해지 환급금	13,250
+ 이전연도 중도 인출 누계액	8,500
- 이전연도 과세된 보험차익	<u>(2,750)</u>
중도 해지 총누계액 (A)	<u>19,000</u>
보험료 납입금액 (B)	15,000
보험차익(2015/16 과세연도) (=A-B)	4,000

주: 2015년 7월 1일자 중도 해지로 보험계약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과세대상 보험사고와 같이 처리함

자료: David Smailes(2015), p.953.

다) 보험차익 계산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1) 의제보험차익세액공제(Notional tax credit)

- 보험차익이 개인의 총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제보험차익세액공제를 적용함¹⁹⁰⁾
 -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세액공제의 적용과 유사한 개념임

- 의제보험차익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basic rate)이므로 개인의 총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본세율인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음¹⁹¹⁾
 - 만일 보험차익이 상위세율(higher rate) 또는 최고세율(additional rate)이 적용된다면 기본세율을 초과하는 상위세율에 대한 보험차익의 부분이 과세됨
 - 이 경우에는 다음에 설명하는 최고소득세액공제(top slicing relief)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다음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의제보험차익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¹⁹²⁾
 -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국생명보험 등
 - 비과세의 적용을 받는 기본생명보험사업, 일반연금보험사업, 적격 건강보험사업의 일환인 공제조합(friendly society)에서 발행한 생명보험 등
 - 특정 보장보험 사업(protection business)에 의한 보험계약 등

190) ITTOIA 2005, s530

191) 2015/2016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음

구분	과세표준(파운드)	세율
기본세율(basic rate)	~ 31,785	20%
상위세율(higher rate)	31,785 ~ 150,000	40%
최고세율(additional rate)	150,001 ~	45%

192) ITTOIA 2005, s531, Sch 2 paras 98, 118; FA 2012, Sch 16 paras 130, 141, Sch 18, para 18.

- 법인세가 과세되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의 기본생명보험 및 일반종신사업의 부분을 이루고 있지 않은 종신연금계약
 - 단, 1974년 3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 1992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체결된 보험계약,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즉시필요종신연금(immediate annuity contract)은 제외함

(2) 최고소득세액공제(Top slicing relief)

- 과세대상 보험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본세율 이외 상위세율이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최고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개인의 총소득에서 보험차익 이외에 다른 소득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환급(tax repayment)되는 세액공제임
- 최고소득세액공제의 계산¹⁹³⁾
 - (a) 과세대상 보험차익의 연환산금액(annual equivalent of the chargeable event gain)을 계산함
 - 연환산금액은 과세대상 보험차익을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경과한 보험계약 기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함
 - (b) 연환산금액에 대한 기본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다시 보험경과기간을 곱하여 보험차익에 대한 초과 세액을 산출함
 - (c) 최고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보험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함
 - (d) (c)의 금액에서 (b)의 금액을 차감하여 최고소득세액공제액을 계산함
 - 만일 음(-)의 숫자가 나오면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193) David Smailes(2015), p.946.

(3) 결손세액공제(Deficiency relief)¹⁹⁴⁾

- 사망·만기·중도 해지·양도 등으로 보험계약의 종료(termination) 시 발생하는 결손에 대해서는 결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상위세율이 적용되는 개인납세자(higher rate taxpayer)에 한함
 - 세액공제의 한도는 상위세율 또는 배당소득 상향세율(dividend upper rate tax)에서 기본세율이나 배당소득 통상세율(ordinary rate tax)을 초과하는 부분임
 - 2010/2011년 이후부터 도입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of tax)과 배당소득 추가세율(dividend additional rate)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최고소득세액공제 및 보험차익 등 산출세액 계산에 대한 예시는 <표 Ⅲ-9>와 같음

194) David Smailes(2015), p.954.

〈표 Ⅲ-9〉 과세대상 보험차익 산출세액 계산(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기간이 5년 경과한 세제비적격 보험계약을 2008/09 과세연도중에 중도 해지하여 10,000파운드의 보험차익이 발생함 • 보험차익의 환산금액은 2,000파운드임 • 2008/09 과세연도 보험차익 이외에 다른 소득은 근로소득 34,000 파운드가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6,800파운드임 • 2008/09년 기본세율 구간은 34,800파운드임 • 인적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최고소득세액공제의 계산〉			
	최고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최고소득세액공제의 적용을 가정하는 경우	
보험차익	10,000	2,000	
근로소득	34,000	34,000	
총소득 합계	54,000	36,000	
기본세율 구간		34,800	34,800
상위세율 구간		9,200	1,200
보험차익 상위세율 산출세액	$9,200 \times 40\% = 3,680$		$1,200 \times 40\% = 480$
보험차익 기본세율 산출세액	$9,200 \times 20\% = 1,840$		$1,200 \times 20\% = 240$
환산금액 초과세액 (480-240) × 보험계약기간 5년			= 1,200
최고소득세액공제액(= 1,840-1,200)			= 640
〈소득세 납부세액의 계산〉			
근로소득			10,000
보험차익			34,000
과세대상 총소득			54,000
기본세율 적용 산출세액	$34,800 \times 20\% = 6,960$		
상위세율 적용 산출세액	$9,200 \times 40\% = 3,680$		
총산출세액			10,640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6,800		
의제보험차익세액공제	2,000		
최고소득세액공제	640		
차감세액 합계			(9,440)
납부세액			1,200

자료: <http://www.taxation.co.uk/taxation/Articles/2010/05/26/260231/nonqualifiers> 수정보완함

다. 보험차익의 비과세 특례 규정

1) 세계적격 생명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특례

- 세계적격 보험계약(qualifying policy)이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기간 중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계약기간 요건, 보험료 납입방법 요건, 보험료 납입수준 요건, 만기환급금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¹⁹⁵⁾
 - 2013년 4월 6일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 등의 경우에는 연간 3,600파운드의 보험료 한도 규정이 적용됨
- 다만,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하여 보험금(capital sum)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계적격 생명보험의 적용을 배제함¹⁹⁶⁾

가) 요건

- 세계적격 생명보험은 계약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함
 - 만일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지환급금(surrender value)의 수준은 납입보험료의 반환금(return of the premium paid)을 초과해서는 안 됨¹⁹⁷⁾
- 보험료의 납입은 최소 10년 또는 보험계약기간의 3/4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조기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장애) 이전까지의 기간임
- 보험료의 납입 수준은 매년 일정하여야 함¹⁹⁸⁾

195) HM Revenue & Customs guidance manuals IPTM2020

196) ICTA 1988, Sch 15 para 10

197) ICTA 1988, Sch 15 para 1(4)

- 어느 12개월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다른 12개월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
 - 어느 12개월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10년 또는 보험계약기간의 3/4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1/8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 사망보험금(the amount assured)의 수준은 아래 보험계약 기간 동안 납입한 총보험료의 75%(the 75 per cent of premiums rule)¹⁹⁹⁾ 이상이어야 함²⁰⁰⁾
- 1976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으로서 75세 이후 보험계약이 종결되고 해지환급금(surrender value)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에 한함
 - 양로보험(endowment policy)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기간
 - 종신보험(whole life policy)의 경우에는 특정보험료 납입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이 없는 종신보험(a whole life policy with no specified premium term)의 경우에는 75세 도달시점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의 수익자(beneficiary)인 개인이 특정 보험기간(relevant period) 동안 특정 보험계약(relevant policies)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총액이 3,6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제적격 보험계약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함²⁰¹⁾
- 여기서 특정 보험기간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 또는 그 이후 개시하는 어느 12개월을 의미함
 - 특정 보험계약이란 개인이 수익자인 세제적격 보험계약으로서, (순수)보장성 보험(protection policy)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임

198) ICTA 1988, Sch 15 para 1(3)(8)

199) 75% 규정(the 75 per cent of premiums rule)은 ① 보장된 수명이 55세를 초과하는 양로보험의 경우에는 75%의 숫자는 55세를 초과하는 매년마다 2%포인트씩 감소되고, ② 75세 이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기보험(term policy)에는 적용 배제됨

200) HM Revenue & Customs guidance manuals IPTM2020

201) David Smailes(2015), pp.972~974.

- 순수보장성 보험이란 만기 시 환급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망보험금(또는 장애)이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함
- 보험료 한도 규정은 2013년 4월 5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 등에 다음 사건이 발생한 보험계약에 적용함
 - 2013년 4월 5일 이후 보험계약상 조건의 변경
 - 2013년 4월 5일 이후 보험계약의 양도
 - 2013년 4월 5일 이후 보험계약상 수익자의 사망
- 보험계약상 수익자(beneficiary)란 보험계약상의 권리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beneficially)으로 소유자를 의미함²⁰²⁾

나) 세제적격 생명보험 요건의 적용배제

- 아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생명보험 과세대상 보험차익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사망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과 일치하는 보험계약
 - 1980년 4월 6일 이전 체결되고, 기업퇴직연금제도(sponsored supersaturation scheme)하의 보험계약²⁰³⁾
 - 2006년 4월 6일 이전 승인된 기업연금제도(approved occupational pension scheme) 관련 보험계약

202) ICTA 1988, Sch 15 para A5; FA 2013, Sch 9 para 2

203) David Smailes(2015), p.968.

라. 보험 관련 상속세 과세 규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the life assured)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free estate)을 구성함
- 타인의 이익(the benefit of another persons)을 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납입한 보험료는 증여로서 과세됨²⁰⁴⁾
- 타인의 보험계약(a policy owned by somebody)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본인의 과세 소득에서 지급하는 일상적인 비용(normal expenditure out of incom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음²⁰⁵⁾
 - 그러나 일상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납부 보험료의 경우에는 잠재적인 비과세 이전 (Potential Exempt transfer, PET)으로 처리되거나 과세대상 이전(Chargeable transfer)으로 처리됨
 - 만일 PET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이전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 7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 상속재산으로 포함됨²⁰⁶⁾
 - 잠재적인 비과세 이전이란, ① 1986년 3월 18일 이후 개인에 의하여 수행된, ② 과세대상 이전으로, ③ 타인 또는 특정 신탁(을 위한 증여를 의미함²⁰⁷⁾

204) IHTM20012

205) IHTA84/S21(1)

206) IHTM14024

207) 특정신탁이란 자산관리신탁(accumulation and maintenance trust), 장애신탁(disabled trust)을 의미함(IHTM04058)

5. 뉴질랜드

가. 납입 단계의 보험료 과세제도

1) 보험료 소득공제

- 뉴질랜드는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이 과세대상소득이 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함²⁰⁸⁾
 - 단, 수령한 보험금 등이 비과세대상소득인 경우 보험료를 공제하지 아니함

나. 수령 단계의 보험차익 과세제도

1)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

가) 사고·상해·질병

- 뉴질랜드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등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본의 반환으로 간주함²⁰⁹⁾
- 이에 보험계약에 따라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받는 보험금(benefit) 등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당해 보험계약에 납입한 보험료도 공제하여 주지 않음²¹⁰⁾
 - 이런 보험계약을 personal sickness and accident insurance policy(이하 PSA insurance)라 하며,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험금을 비과세함

208) IRD(1994), p.8.

209) EY(2014), p.221.

210) Income Tax Act CW 34

- PSA 보험계약으로부터 지급받을 것
 - 업무 등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지급받을 것
 - 수입보장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닐 것
 -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incapacity)란 다음을 포함함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경우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인 장애를 입은 경우
 - 보험금은 아래의 세 가지 형태로 지급됨
 - 장애를 입은 정도 또는 계약상 질병에 명시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병원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을 주기적으로 지급
- 그러나 수입보장에 대한 보험계약(loss of earnings insurance)²¹¹⁾에 따라 질병 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수입보장의 명목으로 수령한 보험금은 과세대상이 되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도 가능함²¹²⁾
-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당해 기간 동안 실제로 벌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추산하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 가능한 최소 및 최대 금액을 제시하여야 함
- PSA 보험과 수입보장 보험이 혼합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 중 일부는 과세대상이 되고 일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납입 보험료의 경우 PAS 보험계약에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2% 이하인 경우 수입보장 보험에 대한 보험료와 함께 공제하여 줌

211)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에 따라 근로자의 수입 보장보험만을 다룸

212) IRD(1994), p.9.

나) 자산의 손상

- 규정은 없으나 자산의 손실 및 사용의 제한으로 수령한 보험금(insurance proceed), 보상금(compensation proceeds), 손실보전금(damage payment)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음²¹³⁾

2) 만기, 중도 해지로 인하여 수령하는 환급금

- 만기 또는 중도 해지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급여(benefit)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생명보험 중 연금(annuity)보험 계약에 따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도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금소득에서 제외함²¹⁴⁾
 - 개인이 생명보험업자와 국내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개인이 국내 거주자인 생명보험업자와 국외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외에서 체결한 다음의 재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도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며²¹⁵⁾, 당해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공제도 불가함²¹⁶⁾
 - 국내에서 지불되지 않고, 국내에서 체결하지 않은 재보험일 것
- 이와 같이 보험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보험금 중 위험보장부분과 투자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개인납세자가 투자원금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²¹⁷⁾

213) Wolters Kluwer(2015), p.291.

214) Income Tax Act CW 4

215) Income Tax Act CW 59C

216) Income Tax Act DR 3

다. 보험차익의 비과세 특례 규정

- 뉴질랜드는 수입금액보전 보험계약에서 수령하는 소정의 보험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금을 일반적으로 비과세함

라. 보험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규정

- 뉴질랜드의 상속세는 1993년 11월 17일 이후 폐지되었으며, 증여세도 2011년 10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사라짐

IV.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관련 소비세 과세제도

1. 우리나라

가. 부가가치세

-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시행된 1977년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험용역에 대하여 금융용역과 함께 VAT 면세를 적용함²¹⁸⁾
 - 금융용역에 대한 면세는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대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개별적인 금융거래에 의한 부가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임²¹⁹⁾
 - 사실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한 많은 논의와 연구들이 있어지만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음²²⁰⁾
- 현행 부가가치세제상 면세인 보험용역은 아래와 같음²²¹⁾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 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218) 현행 세제와 같이 생산·유통 중간단계에서 적용되는 면세제도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발생시키고, 재화와 용역의 가격체계와 거래과정,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여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저해하게 됨(김유찬, 1998, p.9)

219) 이창희(2002), p.41.
용역대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사 금융기관의 면세적용은 업종간 경쟁 중립성을 유지하고 부가가치세제의 단순화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220) 김유찬(1998), 김유찬·한광석(2006), 홍범교 외(2004) 외 다수

2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포함함

- 단,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면세 적용을 배제함
 - 2015년 7월 1일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함

나. 교육세

-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1982년 신설된 목적세임
 - 신설 당시에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시한을 두고 있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시한의 연장 끝에 1991년부터 영구세로 전환됨²²²⁾
 - 신설 당시 교육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구성됨²²³⁾
 -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항목인 이자·배당소득²²⁴⁾
 - 주세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담배전매법에 의한 제조담배의 매도가격
 -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²²⁵⁾

222) 박정수·안종석(1996), p.85.

223) 교육세법 입법 당시 정부 최종안에는 재산세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었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산세는 제외되고, 대신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이 포함됨(이만우 외(2006), p.45)

224) 1990년에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225)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를 소득세에 대한 과세(안종석 외(1996)) 또는 소비에 대한 과세로 보는 의견이 공존함. 후자의 경우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논리가 이에 해당함.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금융용역의 업종에 따라 결정되는 데 반해, 교육세는 기관을 명시하여 대상을 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지만 교육세는 과세되지 않은 금융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자의 주장에 대한 이견이 있음

- 현행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²²⁶⁾를 포함하여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주세 납세의무자에게 세율과 과세표준을 달리하여 부과됨²²⁷⁾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0.5%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의 30%
 - － 등유, 증유, 부탄, 부산물유류의 경우 15%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의 10%
 - － 주세의 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의 경우 30%

- 교육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²²⁸⁾ 「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로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²²⁹⁾

- 금융·보험업자 수익에 대해서 0.5%의 교육세가 부과됨²³⁰⁾
 - 여기서 수익이란,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 그리고 재보험료를 공제하여 계산한 순액’을 의미함²³¹⁾
 - － 수입할인료,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대여료, 수입임대료, 고정자산 처분익,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을 포함함²³²⁾

226) 금융·보험업자란,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교육령 §1 ①) 포함),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정함),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환전영업자,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 금전대부업자(교육령 §1 ②)임

227)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228) 교육세법 별표 제6호

229) 다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제외함(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230) 교육세법 제3조.

231)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2. 국제기구 회원국

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 EU 회원국은 금융 및 보험용역은 EU 부가가치세 지침서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광범위하게 적용함²³³⁾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 수입에 대한 금융 영역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융 및 보험용역의 VAT 과세에 대한 EU 내부적인 검토가 진행됨²³⁴⁾

- 일부 국가들은 재정 수입 확보 및 다른 경제 영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보험용역에 대하여 보험료수입세(Insurance premium tax, IPT)를 도입·운영함
 - 2015년 현재 EU 회원국 22개국 중에서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체코, 폴란드의 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IPT제도를 도입·운영함

- IPT 세율은 보험종류별로 차이가 있으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국제운송보험, 재보험 등 특정 보험에 대해서는 IPT 면세를 적용함
 - IPT 과세표준은 보험회사가 수령하는 보험료 수입액으로 보험금적립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차감하지 않는 총액(gross amount)을 기준으로 함

- EU 회원국별 IPT 도입 현황은 <표 IV-1>와 같음

23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233) Article 135(1) of Council Directive 2006/112/EC

234) 2010 Communication on the taxation of the financial sector(Com(2010)549)

현재까지 금융보험업에 대한 VAT 과세에 대한 EU 회원국 간 동의를 이루어진 바 없음

〈표 IV-1〉 EU회원국 부가가치세 세율 및 보험료수입세 도입 현황

국가	VAT 세율 (표준, 경감)	국가별 IPT 일반사항	
		도입 여부	① 세율 ② IPT 면세 ③ 과세표준
그리스	23%, 13%, 6.5%	○	① 4%,10%,15%,20% ② 10년 이상 생명보험, 국제운송보험, 재보험, 수출회환 ③ 보험료 수입액
네덜란드	21%, 6%	○	① 21% ② 생명보험, 재보험, 건강·상해 보험, 국제운송, 해상보험, 여행보험 ③ 보험료 수입액 등
덴마크	25%	○	① 1.1% ②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재보험, 주택모기지보험 ③ 보험료 수입액
독일	19%, 7%	○	① 3%,19%,22% ② 생명보험, 재보험, 건강보험, 국제운송 ③ 보험료 수입액 등
룩셈부르크	15%, 12%, 6%, 3%	○	① 4% ② 생명보험, 연금보험, 장애보험 ③ 보험료 수입액 등
불가리아	14%	○	① 2% ② 재보험, 생명보험, 국민건강보험, 국제운송, 보증보험 ③ 보험료 수입액
벨기에	21%, 12%, 6%	○	① 9.25% ② 신용보험 ③ 보험료 수입액 등
스웨덴	25%, 12%, 6%	○	① 32%, 45% ② 그룹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이외 보험 ③ 보험료 수입액 등
스페인	21%, 10%, 4%	○	① 6% ② 생명보험, 건강보험, 국제운송보험, 농업보험, 재보험, 수출회환 ③ 보험료 수입액, 보험가액
슬로베니아	22, 9.5%	○	① 6.5% ② 국제운송보험, 수출회환, 재보험 ③ 보험료 수입액
슬로바키아	20%, 10%	×	
에스토니아	20%, 9%	×	
아일랜드	23%, 13.5%, 9%, 4.8%	○	① 1%,3% ② 해상·항공·운송 ③ 보험료 수입금액 등
영국	20%, 5%	○	① 9.5%,20% ② 생명보험, 연금보험, 해상·항공·운송보험, 수출회환, 재보험 ③ 보험료 수입액 등
오스트리아	20%, 10%, 12%	○	① 1%,4%,11% ② 국제거래·수출회환·재보험 ③ 보험료 수입금액 등
이탈리아	22%, 10%, 4%	○	① 2.5%,7.5%,10%,12.5%,17.5%,21.5% ② 생명보험, 재보험, 수출회환 ③ 보험료 수입금액 등
체코	21%, 15%	×	
포르투갈	23%, 13%, 6%	○	① 2%, 3%,19%,22% (인지세형태) ② 생명보험, 재보험, 연금보험 ③ 보험료 수입액 등
폴란드	23%, 8%, 5%	×	
프랑스	20%, 10%, 5.5%, 2.1%	○	① 7%,9%,18%,30% ② 생명보험, 농업보험, 장기간호보험, 재보험, 수출회환 ③ 보험료 수입액
핀란드	24%, 14%, 10%	○	① 24% ② 생명보험, 사고·건강보험, 신용보험, 재보험, 국제운송보험 ③ 보험료 수입액
헝가리	27%, 18%, 5%	○	① 10%,15%,30% ② 생명보험, 건강보험, 재보험 ③ 보험료 수입액

주: 1. EU 회원국의 경우 금융 및 보험은 부가가치세 면세임
 자료: OECD(2014), p.60; Insurance Europe aisbl(2013).

나.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 현재 EU 회원국에 해당하지 않는 OECD 회원국 중 뉴질랜드, 멕시코, 이스라엘, 칠레, 호주만이 보험용역에 대하여 VAT를 과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면세를 적용함
 - OECD는 회원국 대부분이 보험을 포함한 금융분야에 VAT 면세를 적용하는 이유를 부가가치의 정확한 평가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²³⁵⁾
- 그러나 보험용역에 대하여 VAT 면세를 적용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들 중에서 미국, 스위스, 캐나다, 칠레, 터키, 호주가 국가단위 또는 주단위에서 IPT를 도입함
 - 노르웨이, 일본, 한국은 보험용역에 대하여 VAT나 IPT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에 해당함
 - 한국은 보험업자에게 부가되는 간접세로 교육세가 있지만,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 IPT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VAT 면세제도에 대한 대체제도로 보기 어려움²³⁶⁾
-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세율, 보험용역 VAT 과세 여부, 그리고 IPE 도입 현황은 <표 IV-2>에서 설명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보험용역에 대해 VAT 과세하는 뉴질랜드와 호주를 중심으로 보험용역 VAT 과세제도를 본문에서 간략하게 살펴봄

235) OECD/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2014), p.21.

이 외에도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용역의 대가는 이자와 기타 부차적인 서비스 대가와와의 구분이 어려워서 기술적인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음(이창희, 2002).

236) 한국 교육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후술함

□ 그리고 국가단위에서 IPT를 도입한 주요국 중에서 1994년부터 보험용역에 대한 IPT 과세를 개시한 영국의 IPT 과세제도를 살펴봄

〈표 IV-2〉 OECD 회원국 부가가치세 세율 구조 및 보험료 수입세 도입 현황

국가	VAT 세율 (표준, 경감)	보험용역 VAT 과세여부	IPT 도입현황
노르웨이	25%, 8%, 15%	면세	×
뉴질랜드	15%	생명보험 등 - 영세율 일반보험 등 - 과세	VAT 과세
멕시코	16%	생명보험, 농업보험-면세 일반보험 - 과세	도입 3%
미국	-	-	도입 주(state)별 1~4%
스위스	8%, 3.8%, 2.5%	면세	도입 일반보험 5% 특정 생명보험 2.5% (재보험, 생명보험, 운송보험, 건강·상해·사고보험 제외)
아이슬란드	25.5%, 7%	면세	도입 연금보험, 화재보험, 재산보험, 자동차보험 등 정액과세 사고건강여행 4% 기타 8%
이스라엘	18%	과세	VAT 과세
일본	5%	면세	×
캐나다	5%	면세	도입 주(state)별 2~4.4%
칠레	19%	과세	VAT 과세
터키	18%, 8%, 1%	면세	도입 5% (생명보험 제외)
한국	10%	면세	×
호주	10%	생명보험 - 면세 민영건강보험 - 적용배제 일반보험 -과세	도입유지 주(State)별 2~11% 인지세 형태

주: 1. EU 회원국은 제외함
자료: OECD(2001); OECD(2014), pp.60~71; pwc(2011).

1) 뉴질랜드

- 뉴질랜드의 VAT 제도는 생명보험을 제외한 보험용역(일반보험용역)을 VAT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²³⁷⁾
 - 1986년 10월 1일 도입 당시에는 모든 금융용역에 대한 VAT 과세를 고려하였지만, 현행 세제상 B2C 금융용역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면세적용을 함²³⁸⁾
 - 개별적인 금융용역의 평가 어려움이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압박 등 정책적, 경제적,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있음

- 일반보험용역의 경우에는, VAT 과세대상 보험용역을 보험회사가 수령한 수입보험료와 VAT사업자등록을 한 보험계약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구분하여 VAT를 부과함²³⁹⁾
 - 예를 들어, VAT 사업자인 보험계약자가 과세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보험계약자에 의해 제공된 과세대상 용역으로 처리됨
 - VAT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에 대한 VAT는 부과되지 않음

- 생명보험용역의 경우, VAT 사업자(B2B) 간의 생명보험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사업자와 소비자(B2C) 간 거래는 면세를 적용함²⁴⁰⁾
 - 뉴질랜드는 2005년 1월 1일부터 B2B 간 금융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37) OECD(2014)

238) IBFD(2011), p.310.

239) Peter R. Merrill(2011), p.178.

240) IBFD(2011), p.312.

2) 호주²⁴¹⁾

- VAT 과세 목적상 보험용역을 생명보험, 민영건강보험, 기타 일반보험으로 구분하여 달리 VAT를 적용함²⁴²⁾
 - 생명보험용역은 VAT 면세, 민영건강보험은 VAT 적용배제, 그리고 기타 일반보험 용역에는 10%의 VAT를 과세함

-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에는 VAT를 과세하고, VAT 사업자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에는 VAT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지급하는 보험금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VAT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 뉴질랜드와 유사하게 VAT 대상 보험용역을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으로 구분하지만, 세무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에 VAT 과세하지 않음
 - 뉴질랜드와 호주의 보험용역 거래의 세무상 결과는 최종적으로 동일함

3) 영국의 IPT 과세제도

가) 도입 배경

- 영국은 세수 확대, 부가가치세 과세범위의 확대, 제조업 등 다른 경제영역과 금융영역 간 형평성 확보를 도입 취지²⁴³⁾로 하여 IPT를 1993년 최초 제정하고 1994년 10월 1일부터 발효함²⁴⁴⁾²⁴⁵⁾

241) <http://law.atolaw.gov.au/atolaw/view.htm?Docid=GST/GSTR200610/NAT/ATO/00001&PiT=99991231235958>(2016. 4. 14. 접속)

242) A New Tax System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의 Division 78에서 보험용역 VAT를 규정함.

243) HC Deb 30 Number 1993 c 932

244) Antony Seely(2015), p.3.

- 보험업에 대하여 직접 VAT를 과세하지 않고, IPT를 도입한 까닭은 영국이 EU 회원국이었기 때문임
 - 1977년 5월 17일 제정된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the 6th VAT Directives)과 2006년 개정된 부가가치세 지침(Directive 2006/112/EC)에 의거하여 EU 회원국은 보험업 VAT 면세적용을 의무화하였음
- 신설 당시 IPT의 세율은 2.5%이며, 보험료 총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1997년 4월부터는 세율을 이원화하여, 4%의 표준세율과 17.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고, 2015년 11월 이후부터는 표준세율은 9.5%로, 최고세율은 20%로 인상됨

〈표 IV-3〉 IPT 세율 연혁

(단위: %)

적용연도	표준세율	최고세율
1994년 10월 ~	2.5	-
1997년 4월 ~	4	17.5
1999년 7월 ~	5	17.5
2011년 1월 ~	6	20
2015년 11월 ~	9.5	20

자료: Antony Seely(2015), p.3.

나) IPT제도 개요

- IPT 과세대상 보험계약에 의해 수령하는 보험료 수입(insurance premium)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됨
 - 영국 내 모든 종류의 보험위험(insurance risk)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 보험(premium)이란 보험계약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수령하는 모든 지급금으로, 보

245) Finance Act 1994, sections 48-74, Schedules 6A, 7 and 7a(Finance Acts 1997, 1998,1999, 200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and 2015의 개정 반영후)

협회사를 위하여 제3자가 수령하는 지급금도 포함함

- 표준세율은 9.5%이고, 특정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보험, 여행보험인 경우에는 최고세율 20%가 적용됨
 - 2015년 11월 이전에는 표준세율이 6%, 최고세율 17.5%가 적용되었음
 -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특정 용역과 관련된 보험이란, 자동차 등 차량운반구나 가전제품의 범주에 속하는 재화나 용역의 판매와 관련된 보험을 의미함

- IPT 면세대상인 보험은 재보험(re-insurance)을 포함한 아래 보험계약으로 열거됨
 - 생명보험(life insurance), 국민건강보험(permanent health insurance) 및 장기보험(other 'long term' insurance)
 - 단 의료(medical)보험은 제외함
 - 사업용 항공기, 우주선, 사업용 선박 및 관련 의무
 - 구명보트 및 장비 관련, 외국 또는 국제 철도차량 및 관련 의무
 - 수출회환어음(export finance)
 - 사업용 재화의 국제이동
 - 장애 운전자의 차량 임대 관련 포괄보험계약
 - 영국 국외에 위치한 위험(risks located outside the UK)
 - 영불해협터널(the Channel Tunnel)

V. 국제비교 및 요약

1. 국제비교

가. 개인 납세자의 보험 과세제도

1) 납입 단계의 보험료 세제혜택

- 납입 단계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과세대상 보험차익 계산 시 차감이 허용되는 투자원금으로 처리됨
- 조사대상국 중 미국, 영국, 뉴질랜드는 납부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규정이 없음
 - 영국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1984년 3월 14일 이후 체결된 생명보험부터는 적용배제하고,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도 2015년 4월 6일 이후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적용배제함
 - 과거 세제혜택 제공시, 공제된 보험료는 보험차익 계산 시 차감하는 보험료에서 제외함
- 보장성 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는 조사대상국은 한국, 일본이 있음
 - 한국은 보장성 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12%(또는 15%)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 한국은 과세대상 보험차익 계산 시 투자원금으로서의 보험료공제 적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

- 일본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자산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손해보험에 대하여 소득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표 V-1〉 납입 단계의 보험료 세제혜택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³⁾	뉴질랜드
보험료 공제 ¹⁾	세액공제 12%, 15% (100만원 한도)	-	소득공제 (4만엔 한도) ²⁾	-	-
대상 보험계약	보장성보험	-	지진손해보험	-	-

주: 1)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경우나 보험차익의 계산을 위하여 투자원금으로 차감되는 경우는 제외함

2) 2011년 12월 31일 이전 체결의 경우 5만엔 한도임

3) 영국은 생명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됨

2) 수령 단계의 보험차익 과세제도

- 수령 단계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cash inflow)은 크게 환급금(cash value)과 보험금(benefits)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과 그리고 만기 시 수령하는 환급금이 있음
 - 다만,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만기 시 환급금은 없음
 -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사망보험금(death benefits), 중도 해지 또는 만기로 인하여 수령하는 중도환급금(surrender cash value)과 만기 환급금이 있음²⁴⁶⁾
 - 상해, 질병 등 제3보험의 경우도 이에 준한 현금흐름이 기대됨

246) 유배당상품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기간 중 배당금이 유입될 수 있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 일시금(capital sum)과 연금(annuity)으로 구분할 수 있음(OECD 2001, p.15)

가) 보험사고로 수령하는 보험금

- 보험사고를 ① 피보험자의 사망, ②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등(“신체상 상해”), 그리고 ③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자산의 손실”)로 구분하여 국가별 과세 여부를 살펴봄

- 보험계약 당사자가 동일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한국, 뉴질랜드는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비과세 특례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사망보험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됨
 - 비과세 특례 규정은 보장성 요소와 금융상품과 결합한 보험상품의 보험차익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음
 - 일본은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타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수익자와 동일한 보험계약에서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소득세가 과세됨
 - 단, 보험을 실제로 납부한 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됨

- 상속세를 폐지한 뉴질랜드를 제외한 조사대상국 대부분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단, 한국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 소득세가 과세됨

〈표 V-2〉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과세

구분	한국	미국 ¹⁾	일본	영국 ¹⁾	뉴질랜드
소득세	비과세	요건충족시 비과세	과세	요건충족시 비과세	비과세
상속세	과세 ³⁾	과세	과세	과세	- ²⁾

주: 1) 미국과 영국은 소득세제상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험차익 비과세 특례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보장성 요소와 금융상품과 결합한 보험상품의 보험차익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음

2) 뉴질랜드는 상속세가 폐지됨

3) 단, 한국은 피보험자가 타인인 자기를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비과세됨

□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적용됨

□ 신체상 상해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조사대상국인 한국, 일본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미국의 경우,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생명보험계약으로부터 수령하는 보험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영국의 경우 정신적, 신체적 손상 등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치료를 위한 법에서 규정한 특정 장기간병(long-term care)보험에 대해서도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

– 단, 피보험자가 사망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은 그러하지 않음

○ 다만, 뉴질랜드의 경우 신체상 상해로 인한 소득손실에 대한 보전하는 보험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함

– 이 경우 납부 보험료는 보험금에서 공제 가능함

〈표 V-3〉 신체상 상해로 인한 보험금 과세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뉴질랜드
신체상 상해	비과세	요건충족시 비과세	비과세	요건충족시 비과세	비과세(단, 소득보전시 과세)

- 자산의 손실 등을 원인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손실의 보전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경우로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도 있음
- 한국, 일본, 뉴질랜드의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자산의 손상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이 취득원가를 초과하거나, 멸실된 주택으로 발생하는 비용보전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함
 - 전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후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 영국의 경우 양도소득 대상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대가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적용됨

〈표 V-4〉 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금 과세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뉴질랜드
자산의 손실	비과세	과세	비과세	과세	비과세

나) 만기, 중도 해지로 수령하는 환급금

- 만기 또는 중도 해지로 수령하는 환급금은 보험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투자수익과 당초 납부한 보험료 중 투자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회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OECD(2001)는 투자원금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의 과세시기에 따라 두 가지 과세유형을 제시하고 있음
 -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중도해약 또는 만기로 이연하거나, 또는 보험계약 기간 동안 투자수익을 기간별로 과세하고 만기 등 실제 현금 인출시에는 과세하지 않는 방법이 있음

〈표 V-5〉 보험료 적립금 투자수익 과세유형

투자수익 구분	과세유형	
	유형 1	유형 2
적립금 내재 투자수익(inside build up)	비과세	과세
중도해약금	과세	비과세
만기해약금	과세	비과세

자료: OECD(2001), p.34. Table 5 수정함

- 일반적으로 만기나 중도 해지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기간 동안 납부된 보험료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발생시점이 아닌, 수령하는 시점으로 과세가 이연되는 〈표 V-5〉의 유형 1을 띠고 있음²⁴⁷⁾
-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평균보험료와 자연보험료의 차이와 저축성 요소를 띠고 있는 보험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평균보험료이므로 보험 초기에 자연보험료를 초과하는 평균보험료는 보험회사의 내부에 적립되어 투자수익을 창출하고,
 - 저축성 요소를 띠고 있는 저축성 보험료 역시 보험회사의 내부에 적립되어 투자수익을 창출함

(1) 소득구분

- 뉴질랜드를 제외한 조사대상국에서 만기 및 중도 해지로 수령하는 환급금은 소득세가 과세됨
- 한국과 영국은 이자소득으로, 미국은 통상소득으로 소득을 구분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연금의 수령 시 일시소득으로, 연금 수령 시에는 잡소득, 그리고 정기금 급부계약에 따라 일시로 수령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을

247) OECD(2001), p.15.

구분하고 있음

○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환급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²⁴⁸⁾

〈표 V-6〉 만기, 중도 해지로 수령하는 환급금 과세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¹⁾	뉴질랜드
소득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소득구분	이자소득	통상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이자소득	이자소득	-

주: 1) 영국의 경우, 만기나 중도 해지 이외에도 보험계약의 양도나 사망의 경우에도 과세대상 보험차익이 발생함

(2) 보험차익 금액의 계산

- 중도 해지나 만기로 인하여 수령하는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입 보험료 총액은 보험차익 계산 시 차감함
 -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은 보험차익 계산 시 납입 보험료를 투자원금으로 보고 보험금에서 공제함

① 수령 방법에 따른 보험차익 계산방법

- 만기, 중도 해지로 인한 환급금은 일시금(‘연금외 수령’)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국 중에서 수령 방법에 따른 보험차익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영국이 있음
- 한국은 수령한 환급금에서 납입 보험료·공제료를 차감하여 계산하여 보험차익을 계

248) 뉴질랜드는 대부분 보험차익에 대해 폭넓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환급금에 포함된 투자수익의 구분 및 보험차익 계산 시 차감되는 납입 보험료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산하며,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때부터 보험차익을 인식함

○ 연금 수령은 납입 보험료의 회수 이후에나 소득을 인식하여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함

□ 미국은 연금외 수령의 경우에는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우선 수령한 것으로 보아 연금외 수령액 전액을 과세대상 보험차익으로 보고, 연금 수령의 경우에는 수령하는 연금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차감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함

○ 연금수령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일본은 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액 중 원금에 해당하는 납입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계산하고, 연금외 수령은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이외에 일시소득 특별공제(50만엔 한도)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보험차익으로 계산함

○ 연금 수령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영국은 연금외 수령의 경우 환급금에서 공제 가능한 납부보험료 총액을 차감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하고, 연금 수령은 부분 인출이나 부분 중도 해지의 경우에 준하여 보험차익을 계산함

○ 연금수령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표 V-7〉 수령 방법별 보험차익의 계산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연금외수령	(일시금-납입보험료)	일시금 전액	(일시금-납입보험료-일시소득특별공제)×50%	(일시금-납입보험료 - 이전연도 과세 보험차익)
연금수령	(보험금누계액 - 총 납입보험료)	(연금수령 - 원금해당 부분)	(연금수령 - 원금해당 부분)	(보험금누계액 - 인출 가능 보험료 누계액)
과세이연 효과	○	×	×	×

② 연금 수령 개시 이전 중도 인출 또는 부분 중도 해지시 보험차익 계산방법

- 보험계약에 의하여 연금 수령 개시 이전 중도 인출 또는 부분 중도 해지(partial surrender)하는 경우 미국과 영국은 보험차익을 인식하는 규정이 있음
- 미국은 연금 개시일 이전에 수령하는 일시금은 해당 시점에서의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분을 보험차익으로 계산함
- 영국은 부분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한 보험금에서 인출가능 보험료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계산함
 - 영국은 연간 보험료 불입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고 인출할 수 있음

4) 보험차익의 비과세 특례 규정

- 생명보험 보험차익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도입한 한국, 미국, 영국을 살펴보면 한국은 저축성 보험을 대상으로, 나머지 국가들은 보장성 보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과세 되는 대상 보험에 차이가 있음
 - 한국은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특례 규정에 해당됨
 -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10년 이상 2억원 한도의 일반 저축성 보험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 미국과 영국은 사망을 원인으로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의 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특례 규정에 해당함
 - 보장성 요소에 금융투자요소를 결합한 보험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에 해당되며, 규정상 요건 적용 시 보장성 요소보다 저축성 요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은 소득세제를 적용함

- 일본은 별도 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은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보험차익 금액의 계산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일시소득특별공제와 공제후 소득의 50%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음

〈표 V-8〉 국가별 보험차익의 비과세 규정 요건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영국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일반저축성 보험		
도입 취지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소득세 비과세			저축성 요소와 결합된 보험상품의 사망보험금 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보장성 요소의 검토	
계약기간	10년 이상	-	10년 이상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기간	5년 이상	-	10년		10년 이상 또는 보험계약기간의 3/4에 해당하는 기간
보험료 납입방법	기본보험료 균등, 선납의 경우 6개월 이내	-	-		매년 일정수준 납입 매년 또는 정기적 납부
보험료 납입한도			2억		연 3,600파운드 한도 단, 본인이 수익자인 세계적격보험
보험금 수령기간	-	55세 ~사망			
수령방법	-	연금 수령			
수령한도	-	연금수령 한도 내			
보험계약 당사자	-	동일			
보장성 요소 테스트		사망 시 연금재원 소멸		① 보험료납입) 환급금 ② 가이드라인 보험료) 환급금 ③ (해약환급금×일정 비율)(사망보험금	① 환급금(납입보험료(단, 10년 미만인 경우) ② 사망보험금) > 납입 보험료의 75%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 미국 26 US. code§ 7702, 영국 ICTA 1988, Sch 15

나. 보험 관련 소비세

- 대표적인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면세함
 - EU 회원국의 경우에는 EU 부가가치세 지침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면세하고 있음
 - OECD 회원국 중에서 뉴질랜드, 멕시코, 이스라엘, 칠레, 호주를 제외한 국가들은 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함

-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의 확대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 및 다른 경제영역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대부분 국가들은 보험회사가 수령하는 보험료 수입에 대하여 보험료세(IPT)를 부과하고 있음
 - EU 회원국 중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체코, 폴란드는 IPT를 도입하지 않음
 - OECD 회원국(EU 회원국 제외) 중에서는 노르웨이, 일본, 한국 이외 모든 국가들이 IPT를 도입함

- 한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자에게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IPT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교육세는 보험에 한정하여 부과되는 세목이 아니라, 정책적 목적에 의해 금융보험업자를 비롯하여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고 있음
 -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보험료수입 총액이 아닌 책임준비금 등 적립금 및 재보험료를 공제하여 산출한 순액의 개념에 해당함
 - 적용세율은 0.5%로 IPT 세율 및 현행 부가가치세의 세율과의 차이가 매우 큼

〈표 V-9〉 IPT와 한국의 교육세 비교

구분	적용 범위	과세표준	세율
IPT	VAT 면세대상 보험용역	보험료수입금액 총액	부가가치세율과 거의 유사
교육세	금융보험업자,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의 납세의무자	(보험료수입금액·적립금 등)	0.5%

2. 요약

- 우리나라 보험 과세제도는 보험산업 및 보험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초기에 조성되었던 조세환경이 현재까지도 일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²⁴⁹⁾
 - 과거 보험산업 육성 및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존중하여 1976년부터 허용된 보험료 공제 규정은 보험산업 환경 및 사회적 환경이 현저하게 달라진 현 시점까지도 당연히 적용되고 있음²⁵⁰⁾
 - 금융투자 성격을 띠고 있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하고, 사망을 원인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미국과 영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보험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보험차익에 대하여 광범위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비세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험용역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 국가들이 소비세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용역은 금융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 취급하여 VAT 면

249)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규정을 살펴보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계약기간이 3, 5, 7, 10년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가입한도 규정이 도입되는 등 보험차익에 과세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시도되고 있음

250) 보험료공제 적용과 함께 보장성 보험의 보험차익 소득세의 미적용으로 인하여 현행 소득세제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이중적인 혜택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음

세를 적용하고 있음²⁵¹⁾

- 금융·보험업자에게는 목적세인 교육세가 부과됨

가. 개인 납세자의 보험 과세제도

1)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조사대상국 중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출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 단, 일본은 소득공제 대상보험을 지진위험에 대한 보장성 보험에 한정함
-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료공제제도가 최초 도입된 1976년 당시의 세제적격 보험계약은 저축성 보험계약으로 보험산업 육성이라는 취지 이외에도 노후 대비를 위한 재원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배려로 판단됨
 -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제도의 도입 등 사회보장 기능이 강화되고, 세계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수준이 1970년대 환경과는 현저하게 차이²⁵²⁾가 나므로 현행 규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2) 보험차익 과세제도

- 금융투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보험차익에 대하여 미국, 영국, 일본은 기본적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은 사망, 상해, 질병 등 보장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으로 인한 소득으로 과세함

251) 그러나 보험계리용역이나 연금계리용역은 면세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252) 2014년 현재 88개의 대상국 중에서 세계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8위이고 세계 손해보험시장의 경우에는 9위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예·적금과 유사한 성격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 특정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비과세하고, 사고, 사망, 상해 등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자산의 손실 등을 원인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영국은 자본이익의 실현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며, 뉴질랜드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소실된 소득을 보전하는 보험으로부터 수령하는 보험차익을 소득세 과세함

○ 우리나라는 자산의 손실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을 손실의 전보로 보고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3)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보험금

□ 조사대상국에서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투자원금과 소득부분으로 구분하여, 실제 수령 시점마다 과세하지만(〈표 V-7〉 참조), 우리나라는 과세대상 보험차익은 수령한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때까지 과세대상 보험차익을 인식하지 않음²⁵³⁾

□ 현행 소득세제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대부분 원천징수시기인 지급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²⁵⁴⁾, 이자소득인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허용함

4) 피보험자를 타인으로 하는 보험

□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의 경우(자기를 위한 타인의 보험), 피보

253) 국세청 유권해석 원천-737(2010.09.15.)

254)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지급일, 약정에 의한 지급일,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약정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함

험자에게 발생하는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계약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일본, 미국 등 조사대상국은 소득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 세제상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음²⁵⁵⁾²⁵⁶⁾

- 현행과 같이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에 대해 비과세하는 경우,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와 편법적 행위가 성행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자녀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이고 아버지가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속세나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²⁵⁷⁾

나. 보험 관련 소비세

- 우리나라 보험용역에 대한 소비세를 살펴보면, 1977년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금융용역과 함께 VAT 면세를 적용함²⁵⁸⁾
 - 1982년부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목적세인 교육세가 부과됨²⁵⁹⁾
- OECD 회원국 중에서 뉴질랜드, 멕시코, 이스라엘, 칠레, 호주가 보험용역에 대하여 VAT를 과세하고, EU 회원국들은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의해 보험용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면세를 적용함
 - 이들 국가 대부분은 보험용역 관련 소비세로 IPT을 도입하고 있음

255) 손영철·김종필(2012), p.231.

256) 보험계약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자도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상속세를 적용하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이나 동일하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를 적용함

257)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아버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후단)

258) 이와 같이 면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금융용역에 대한 면세는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대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개별적인 금융거래에 의한 부가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임. 최근 세법개정을 통하여 금융용역에 대한 면세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있음

259) 교육세를 소비세가 아닌 소득세에 대한 과세로 보는 의견도 있음(안종석 외(1996))

참고문헌

- 김두철 · 서병남, 『생명보험 LIFE INSURANCE』, 형설출판사, 2015.
- 김창기, 『보험학원론』, 문우사, 2015.
- 김학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 · 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6.
- 안중석 · 박종수, 『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확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6.
- 안중석 · 한광석,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 06-13, 한국경제연구원, 2006.
- 유형용, 「보험계약을 이용한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13.
- 이경룡, 『보험학원론』, 영지문화사, 2011
- 이만우 외,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7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6.
- 이인범 등, 「보험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제31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14.
- 이창희,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서울대 법학』, 2002.
- 이현열, 「금융상품과 소비자 보호-보험상품을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제4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2007.
- 이현열, 「보험단체론-보험의 본질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103집 15-07, 한국보험학회, 2015.
- 보험연수원, 『재산보험』, 2013.
- 서희열 등,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 제11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10.
- 생명보험협회, 『2015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생명보험협회 판매제도부, 2015.
- 손해보험협회, 『한국의 손해보험 2015』, 2015.
- 손영철·김종필, 「보험상품에 대한 세법적 고찰」, 『법학논총』 24(3),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송경학, 「혼성보험계약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5.
- 신보미·심태섭, 「우리나라 보험차익 과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2013년 2월 15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연구』, 통권 제4호(제2권 제2호), 한국세무회계학회, 2013.
- 조석희, 『국제회계기준(IFRS)하에서의 보험회계』, 신영사, 2015.
- 홍범교 외, 『금융산업에 대한 과세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4.
- 한국신용평가, 「생명보험 Life Insurance」, KIS Industry Outlook, 2014. 12
- _____, 「생명보험 Life Insurance」, KIS Industry Outlook, 2012.
- Antony Seely, “Insurance premium tax, Briefing paper Number 01425,” House of Commons Library, 2015.
- David Smailes, “Tolley’s Income Tax 2015-16, 100TH Edition,” LexisNexis Butterworths, 2015.
- EY,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4,” 2014.
- EY, “Global Insurance Premium Tax(IPT) Newsletter,” 2015.
- Inland Revenue Department. “IRD tax information bulletin,” Volume six, No4, 1994.
- Inland Revenue Department And by the New Zealand Treasury, “Life insurance tax reform,” 2006.
- Insurance Europe aisbl, “Indirect taxation on insurance contracts in Europe,” March 2013.

IBFD, Financial Services under New Zealand's GST, International VAT Monitors
September/October 2011.

IRS, "Publication 547 Casualties, Disasters, and Thefts," 2015.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OECD Publishing, 2014.

OECD/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Consumption
Taxes in OECD Countries," *OECD Tax Policy Studies*, No. 22, OECD
Publishing, 2014.

PWC, "International comparison of insurance taxation 2011," 2011.

Peter R. Merrill, "VAT Treatment of the Financial Sector," Tax Analysts, 2011.

Swiss Re, sigma: world insurance in 2014, NO4/2015.

Wolters Kluwer, "New Zealand Master Tax Guide," 2015.

호주 국세청(<http://law.ato.gov.au/>, 검색일자: 2016. 4. 14.)

미국 국세청(<https://www.irs.gov>, 검색일자: 2016. 4. 14.)

일본 국세청(<https://www.nta.go.jp>, 검색일자: 2016. 4. 14.)

뉴질랜드 국세청(<https://www.ird.govt.nz>, 검색일자: 2016. 4. 14.)

부 록

〈부표 1〉 생명보험계약 관련 개인소득세 및 상속세 과세제도 국가별 비교

국가	개인소득세 과세			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
	적립금 내재 투자수익	환급금(중도, 만기)	사망 보험금	
호주	비과세	소득보장보험계약으로부터 수령 또는 10년 이내 현금화하는 특정 보험계약으로부터 수령하는 보험금 과세/기타 비과세	비과세	-
중국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
홍콩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
인도네시아	3년 미만, 인출시 보험차익의 2% 원천징수	3년 미만 저축성 보험의 경우, 20% 분리과세	비과세	비과세
말레이시아	비과세	종신연금 또는 정기적 보험금은 과세	비과세	-
싱가포르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브라질	비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캐나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과세	보험배당금 및 대출을 포함한 보험차익 과세	저축성 보험 과세	비과세
오스트리아	비과세	종신연금 또는 15년 미만 즉시보험계약의 경우 과세	비과세	-
벨기에	해당사항없음	생애주기 동안 수령 보험금은 이자소득 과세	비과세	과세
덴마크	15%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단, 배우자 수령시 비과세)

〈부표 1〉의 계속

국가	개인소득세 과세			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
	적립금 내재 투자수익	환급금(중도, 만기)	사망 보험금	
핀란드	비과세	과세	특정요건 충족시 비과세	과세
프랑스	비과세	과세	과세	과세
독일	인출시 25% 과세	과세	비과세	-
인도	비과세	비과세 (단, 중도 해지, 인출, 종신연금의 경우 과세대상임)	비과세	비과세
아일랜드	비과세	만기, 중도 해지, 양도의 경우 출국세 과세대상임	비과세 (단, 출국세 과세)	과세
이태리	자본이득·이자소득 12.5% 과세	중도 해지시 자본이득 12.5% 과세	비과세	과세
룩셈부르크	비과세	비과세	수익자가 수령하는 종신연금 과세	과세 (중여관련세제 적용시 제외)
네덜란드	보험보증대출로 사용된 양로보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52% 과세	30% 과세	비과세	과세
폴란드	과세	비과세 (단, 자본펀드 보험계약의 경우 19% 과세)	비과세	비과세
포르투갈	비과세	과세	비과세	-
러시아	비과세	과세(단, 요건충족시 비과세)	비과세	-
남아프리카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과세
스페인	비과세	이자소득 과세	비과세	과세
스위스	비과세	요건충족시 비과세	과세	과세
터키	비과세	과세	과세	과세

- 주: 1. 고용관계나 관련법령에 의해 의무가입하는 생명보험계약은 제외함
 2. 호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러시아는 상속세제가 없거나 폐지됨

자료: pwc, *International comparison of insurance taxation*, 2011 edition, Finance Services, policyholder taxation 편 참조, EY,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5, Life Insurance 편 참조

세법연구 15-1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2015년 12월 23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이상엽 · 박수진 · 이은별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ISBN 978-89-8191-828-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